

남북교역 실무안내

목 차

I. 남북교류협력 기반형성	5
1. 남북교류협력 개황	5
2. 남북교역 제도 발전	8
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8
나.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확립	9
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 발효	12
라. 남북교역 여건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14
II. 남북교역 및 수송 현황	21
1. 단순 물자교역	21
가. 추진현황	21
나. 교역형태·품목	23
2. 위탁가공교역 현황	26
3. 수송장비 운행 현황	28
가. 개 황	28
나. 남북간 선박운행	29
다. 남북간 자동차운행	31
라. 남북간 항공기운행	32
III. 남북교역 절차	33
1.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왕래	33
가. 북한주민접촉	33

나. 남북한 왕래	38
2. 남북교역	47
가. 남북교역의 개념	47
나. 남북교역의 당사자	48
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49
라. 남북교역 추진절차	51
마. 위탁가공교역	66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68
가. 기금대출 개요	68
나. 기금대출 대상	69
다. ~사. 지원 세부내역	70

〈부록 1〉

■ 전자민원 신청 안내 및 서식	81
1. 북한주민접촉	81
2. 북한 및 남한 방문	93
3. 교역물품 반출·입	102
4. 수송장비 운행	118
■ 서류민원 신청 관련 서식(외국인 등 사용)	126
1.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방문	126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 운행	139
■ 자금대출 신청서	154

〈부록 2〉

▣ 남북교역 관련 법규	157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57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65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85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188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90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198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208
8.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211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213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227
11.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234
12. 남북협력기금법	239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243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249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251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79
17.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297
18. 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	304
▣ 남북교역 관련 합의서	305
1.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305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312
3. 남북해운 합의서	320
4.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327

5.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332
6.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335
7.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340
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345

<부록 3>

■ 남북교역의 약사 353

I. 남북교류협력 기반형성

1. 남북교류협력 개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소 대결이라는 양극구조의 논리에 의해 운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남북한도 서로 상대방을 정치·군사·이념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들은 국제체제에 있어서 냉전의 구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태동시키게 되었다.

즉 한반도 분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냉전체제의 붕괴는 남북한 갈등관계의 청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7·7선언」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그해 10월에는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7선언」이 하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부분적이

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주민 접촉과 교역이 제도적인 틀내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제도화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 제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7·7선언」과 그 후속조치들로 이어진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조성 노력은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비롯한 실천적 후속조치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5년 4월 그동안 남북교역에 참여해온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교역품목통관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지방상공인의 남북교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4월 지방소재 한국무역협회 10개 지부에 남북교역 상담창구를 개설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외무역법」 개정 및 남북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7년 4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구분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요하는품목'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자동승인품목(포괄승인품목)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해 오던 반출·입 승인 제도의 폐지 및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의 신설 등을 포함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특히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경분리원칙으로 남북경

재협력 적극추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4월에는 IMF체제 이후 침체되어 있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6월에는 기계·장치·설비의 대북반출승인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대폭 축소(205개→178개)함으로써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대상품목의 폭을 크게 넓혔다.

또한 1999년 8월에는 남북교역의 질서확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피해 구제, 식물검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대해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조정하고, 위탁가공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의 반출입에 대해서는 거래형태가 임대 또는 무상인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입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99. 8. 16)

이어 10월에는 대북 투자 및 교역·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을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관련 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친 남북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는 한편, 민간차원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남북관계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고 있으며 개성공단 조성, 남북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향후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입주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남북교역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남북교역 제도 발전

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한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과 관련국간의 관계개선 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동 조치로 인해 기업인들의 방북이 허용되는 한편 남북간 협력사업(자) 승인 등이 구체화되는 등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 경험 활성화 조치('94.11.8)〉

- ①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 허용
 -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
 - 민간차원에서 북한 경제인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및 우리 산업현장 견학 등의 사업 추진 허용
- ②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기술자 방북 허용
 - 생산설비 운용·기술지도·품질관리 요원 등
 - 수시방북 절차 간소화 등 편의지원 방안 강구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 허용
 - 대규모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비 등의 반출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 기타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으로 반출
- ※ 시설재 반출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③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 분야
 - 단기간내 경험효과가 가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나.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확립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교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남북교역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자유화의 확대 등 대외무역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남북교역이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교역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교역품목의 구분과 관계없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품목 구분을 그대로 남북교역 품목 구분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동 고시의 개정으로 남북교역 교유의 교역대상품목 구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교역의 독자성이 재고되었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95.1.3)〉

- 북한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반입을 허용할 경우 수입자유화 등 대외시장 개방과 맞물려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225개 품목을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구분·관리
- 남북교역 품목을 국제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 자동승인품목이라도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 통일부장관의 승인 필요

1998년 4월 30일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98.4.30)〉

□ 기본방향

-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민간주도의 경협 추진
- 정부는 경협질서 유지를 위한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경협추진 여건 조성에 노력

□ 조치내용

① 접촉·방북

- 방북요건(초청장 등) 구비시, 승인을 원칙
-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 및 경제단체장도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시 적용 → 기업인 방북에 일반적으로 적용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연장(1년 → 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
 - 접 촉 : 현행 20일 → 15일
 - 방 북 : 현행 30일 → 20일

② 교 역

-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
-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 임대 허용
 -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불)의 기준 폐지

③ 협력사업

-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현행 500~1,000만불 규모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 ▷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 전자공학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
 -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사업
 -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300만불 이하의 협력사업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

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 발효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보장 장치 마련을 위해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정식 서명하고, 2003년 6월 30일 국회 동의 및 8월 20일 발효통지문 교환을 거쳐 발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경협 4개 합의서 〉

① 투자보장 합의서

- 남과 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를 부여
 - 아울러 투자 및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
-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한 수용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
- 남과 북의 일방과 그 상대방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이를 해결

②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안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은 기업 이윤 중등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과세

- 일방의 기업이 자동차·열차·배·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통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는 그 일방이 과세하되,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은 세액의 50%를 감면하여 그 상대방이 과세
-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에서 과세할 수 있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그 소득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세
- 일방의 거주자와 기업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와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③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
-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동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상사분쟁사건과 「투자보장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을 관할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인으로 구성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그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
 -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위의 의뢰에 따라 의장중재인 선정

-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 *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④ 청산결제 합의서

-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의 대금에 대하여 적용
- 남과 북은 각각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한 후 상대방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하도록 하되,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달러화로 선정
 - 남북합의하에 다른 화폐로 할 수 있음.
- 청산결제 이외의 대금결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처리
 - *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청산결제은행 선정 문제 등 협의

라. 남북교역 여건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정부는 「경험활성화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의 대북 반출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교역대상 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199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98.6.19)〉

- ① 기계·장치·설비의 경우 “1회 100만불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그 협력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은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승인없이 반출·입
- ③ 별표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
- ④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도서, 음반, 비디오필름 등을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명시하여 반입승인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정부는 최근들어 북한물품의 부정 반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교역질서 확립과 국내 산업피해 구제, 방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일부품목에 대해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거래형태(무상)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요하게 되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99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99.8.16)〉

①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조정

- 산업피해 구제, 식물검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반입제한이 필요한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승인대상품목으로 분류
 - 포켓용ライター(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및 없는 것)
 - 벗짚
 - 꽃게(산것·신선 또는 냉장 및 냉동)
- 북한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민어'는 반입승인대상품목에서 삭제
 - ※ 별표 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수는 178개에서 182개로 늘어남.

② 반출입 절차 간소화

- 무상반출입 등 거래형태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없이도 반출입 가능

③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북한 물품반입승인신청서' 등 4종의 서식을 제정

④ 용어 및 조문 정리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대해 새로이 구분 정리

또한 외국인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승인대상물품으로 분류코자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2000.9.28)〉

○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조정

- 국내산업피해 구제조치(긴급관세 30% → 315%)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냉동마늘 등에 대하여 반입승인대상물품으로 분류
 - 냉동마늘(0710.80.2000)
 - 초산조제마늘(2001.90.9060)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의 개정에 따라 반입승인대상물품중 일부를 개정
 - 마늘(0703.20.0000) → 탈피한 것(0703.20.1000)
기 타(0703.20.9000)
- ※ 별표 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수는 182개에서 185개로 됨.

남북관계 개선 및 교역증대 등으로 인한 교류협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역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동안 교역과 관련한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개정 (2001.10.31)〉

① 북한방문 유효기간의 연장

- 현행 1년 6개월 이내의 북한 방문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② 수시방북 절차의 간소화

-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 매 귀환시마다 증명서를 반납하던 것을 유효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반납

③ 방북안내교육 및 결과보고서 제출 법적 근거마련

- 남북교역 질서 확립 등을 위한 방북 안내교육 및 접촉·방북 결과 보고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④ 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제도 마련

-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또한 3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가능

한편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01.12.31)을 통해 반입물량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 수급불안정 문제의 해소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한하고, 시장접근물량 증대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중인 품목 등에 대해서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삭제하는 등 반출입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1.12.31)〉—

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신설

- 수산물 : 냉동 게(붉은대게, 대게암컷 및 두홍갑장 9cm 이하에 한함), 신선·냉장 게(붉은대게, 대게암컷 및 두홍갑장 9cm이하에 한함)
- 농산물 : 들깨, 인삼분(백삼), 인삼정(백삼), 기타견과 땅콩의 씨류(조제저장처리), 고추장, 혼합조미료, 혼합조미·조제품기타, 인삼류(기타백삼제품류)

②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제외

- 수산물 : 냉동 홍어

- 농산물 : 감귤(신선/건조), 맨더린류(감귤이외/신선·건조),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레몬·그레이프푸르트 이외/신선·건조),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3kg 이하 포장),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 맥주맥, 맥아(볶지 아니한 것), 맥아(훈연한 것)

③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 신설 : 컴퓨터

정부는 2002년 10월 24일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을 통해 제3국산 물품의 북한산 위장 반입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간 교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북한물품의 국내 반입시 「신고」 물품의 반입승인 등 현실성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개정하여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2.10.24)〉

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제외

- 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신고」 대상물품을 포괄승인 품목으로 변경

②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조정

- 영 제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다만,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최근인 2003년 12월 22일에는 위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수산자원보호령의 바뀐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동·식물검역상의 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의 위장반입을 방지하며 반입실적에 따른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외적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반입제한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3.12.22)〉

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신설

- 한약재 : 녹용전지, 녹용기타, 녹각
- 임산물 : 냉동밤, 냉동대추, 냉동잣, 냉동호두
- 수산물 : 건명태(복어), 건조어류피렛트(명태포)

②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제외

- 수산물 : 미꾸라지(활어)

③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중 제한내용 추가

- 꽃게의 산란기간 중 반입제한(7.1-8.30)
-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치게(두흉갑장 9cm 이하, 털게 7cm 이하) 반입제한

II. 남북교역 및 수송 현황

1. 단순 물자교역

가. 추진현황

한반도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류는 1988년 「7·7선언」 후속조치로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규모는 미미하였지만 1989년에는 1천9백만달러,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천3백만달러의 교역량을 달성하면서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류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섰으며 1992년에는 1억7천만달러를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단순 물자교역 형태를 벗어나 보다 더 발전된 위탁가공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1993년과 1994년도에도 남북간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2천5백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남북간 경험은 그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 11월 정부가 남북간의 시범적 경험과 기술자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경험 활성화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1995년에는 2억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6년에는 교역규모가 2억5천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진전 등에 힘입어 교역량이 3억8백만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사상 최초로 3억달러를 돌파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1998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남북간 교역도 큰 영향을 받게되어 금강산 관광사업 및 무상지원 물품의 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역액이 2억2천만달러에 머무는 등 교역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곧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내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999년 남북교역액은 농수산물 반출입, 위탁가공교역 및 비거래성 물자반출 증가에 따라 3억3천만달러로 급상승하였다.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전기·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4억달러를 넘어섰고, 2001년에는 국내경기 침체, 남북한간 운송여건 등으로 2000년에 비해 교역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4억달러선을 유지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거래성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비거래성교역인 대북 식량차관, 철도·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 제공 등에 따라 6억달러를 넘어섰고 남한이 북한의 제2 교역상대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3년에도 남북 교역량이 2002년 대비 12.9% 증가한 7억2천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에 이어 북한의 제2 교역상대를 유지하였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이래 2003년 까지의 교역실적은 통관기준으로 총 42억9천만달러이며, 이중 반입이 23억5천만달러, 반출이 19억4천만달러이다

남북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건 수	품목수	금 액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3	105,719	-	16	5,547	300	57	111,266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572	92	173,426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698	103	186,59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975	158	194,547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644	244	287,291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3,383	258	252,039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991	36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4,810	449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6,510	488	333,437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7,394	578	425,148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7,754	549	402,95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8,796	572	641,73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11,209	588	724,217
계	31,624		2,355,544	27,562		1,939,578	59,186		4,295,122

* 주 : '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 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나. 교역형태 · 품목

(1) 교역형태

남북한간 교역은 북한이 초기에는 직접적인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인

정하지 않았고 제도적 여건 미비로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남북간 교역액이 증가하면서 농수산물 및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에 대해 북한측과 직접 상담하고 계약하는 직접교역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8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 거래방식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에 경협의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고 있어 직접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입과 반출의 비율은 초기에는 10 : 1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6년에는 3 : 1, 1997년에는 1.7 : 1로 반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1 : 1.4, 1999년에는 1 : 1.7, 2000년에는 1 : 1.8, 2001년에는 1 : 1.2, 2002년에는 1 : 1.3, 2003년에는 1 : 1.5의 비율로 최근 반출이 반입을 초과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식량차관 지원, 금강산 관광사업물자, 경수로사업물자, 인도지원물자 등의 반출에 기인하고 있다.

(2) 반입품목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초기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금피, 아연 피 등 철강 금속류를 비롯하여 광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1994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철강 금속과 광산물의 반입 비중이 줄어들고 위탁가공제품인 섬유류의 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2차산품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형태로 품목구조가 바뀌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1차산품인 농수산물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아울러 위탁가공교역의 증가에 힘입어 2차산품인 섬유류의 반입도 일정정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도 반입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44.2%, 섬유류 33.4%, 철강금속류 11.3%, 광산물 5.9%, 전자 및 전기제품 3.0%, 생활용품 1.3%, 기계류 0.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도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 반입현황

(단위: 천달러, %)

품 목	'02(A)		'03(B)		증 감 율 (B/A)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농림수산물	99,993	36.8	127,846	44.2	27.9
광산물	8,600	3.2	17,139	5.9	99.3
화학공업제품	603	0.2	1,003	0.3	66.3
플라스틱· 고무가죽제품	548	0.2	521	0.2	-4.9
섬유류	85,849	31.6	96,527	33.4	12.4
생활용품	3,463	1.3	3,814	1.3	10.1
철강·금속제품	18,821	6.9	32,743	11.3	74.0
기계류	1,806	0.7	831	0.3	-54.0
전자전기제품	9,534	3.5	8,677	3.0	-9.0
잡제품	42,358	15.6	149	0.1	-99.6
소 계	271,575	100	289,252	100	6.5

(3) 반출품목

북한으로의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최대품목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1993년부터는 위탁가공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섬유류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품목 구조가 크게 바뀌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북한 원전건설용 물자,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 무상지원물자의 반출증가로 농산물, 건설용 자재·장비 등의 반출이 증가되고 있다.

2003년 반출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21.0%, 농림수산물 28.9%, 섬유류 20.5%, 기계류 6.4%, 철강·금속제품 6.5%, 전자및전기제품 4.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3%로 전년에 비해 농림수산물과 섬유류가 증가한 가운데 여타 품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 반출현황

(단위: 천달러, %)

품 목	'02(A)		'03(B)		증감율 (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농림수산물	110,197	29.8	125,508	28.9	13.9
광산물	5,103	1.4	6,296	1.4	23.4
화학공업제품	89,617	24.2	91,406	21.0	2.0
플라스틱· 고무가죽제품	4,115	1.1	5,758	1.3	39.9
섬유류	67,262	18.2	89,025	20.5	32.4
생활용품	5,507	1.5	3,585	0.8	-34.9
철강·금속제품	26,518	7.2	28,079	6.5	5.9
기계류	37,867	10.2	27,900	6.4	-26.3
전자전기제품	22,116	6.0	21,111	4.9	-4.5
잡제품	1,853	0.5	36,298	8.3	1858.9
소 계	370,155	100	434,965	100	17.5

2. 위탁가공교역 현황

위탁가공교역은 우리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가방을 간접교역방식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1992년 838천달러, 1993년 7,008천달러, 1994년 25,663천달러, 1995년 45,892천달러, 1996년 74,402천달러, 1997년 79,069천달러로 크게 증대되어 왔다.

1998년 위탁가공 교역액(70,988천달러)은 IMF상황하의 국내경기위축으로 전년도에 비해 10% 감소하였으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1997년도의 26%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은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었으며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129,190만달러로 증가하는 등 그 증가 추세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2001년에는 124,924천달러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가운데 2002년도에는 의류 분야 임가공 증가에 힘입어 171,177천달러, 2003년도 185,009천달러로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북한측에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 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하고, 낙후된 경공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북한간 임금수준 차이와 상이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상호보완성이 높은 위탁가공 분야는 섬유류, 전자부품 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칼라TV, 전화기, 자동차배선, 컴퓨터 모니터,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위탁가공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총금액	위탁가공	총금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1990	12,278	-	1,188	-	13,466	-
1991	105,719	-	5,547	-	111,266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2001	176,170	72,579	226,787	52,345	402,957	124,924
2002	271,575	102,789	370,155	68,388	641,730	171,177
2003	289,252	111,639	434,965	73,370	724,217	185,009
합 계	2,355,544	572,330	1,939,578	441,451	4,295,122	1,013,780

3. 수송장비 운행 현황

가. 개 황

정부는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의 질서를 확립하고 체계화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6월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남북한간에 선박,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통일부장관의 승

인을 받도록 하였다. 선박운행에 있어서는 북측이 아직 우리 국적선의 수송을 전면 개방하지 않아 제3국적선에 의한 수송이 대부분이나 식량차관, 비료지원 등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물자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자재·장비, 경수로 인력 및 물자, 평양체육관 건설물자 및 금강산관광 물자의 수송은 우리 국적선이 운항하여 2003년에는 편도 기준 총 360회로 전체의 약 17.8%를 차지하였다. 한편, 2004년 1월에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지원하는 감귤 수송을 위해 국적선이 운항한 바 있다.

그동안 남북간 화물 운송은 해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나,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로 2003년부터 육로에 의한 물자수송과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2002년 12월 28일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가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국적선 운항의 증가는 물론 남북간 해상수송이 더욱 활성화·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협의중인 열차운행합의서, 차량운행합의서가 발효될 경우 철도차량과 자동차에 의한 육로 운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물류비 절감효과와 함께 남북간 교역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남북간 선박운행

(1) 운행 현황

현재 남북간 선박운행은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구분되고 있다. 정기선은 2004년 3월 현재 총 3개로 남북간 교역 및 경험물자 수송을 위해 인천-남포간에 국양해운(주) Trade Fortune(트레이드 포춘)호가 주

1회(매주 수요일 인천 출항), 부산-나진간에 동룡해운(주) Chu Xing (추싱)호가 월 3회(10일에 1회), 경수로 인력수송을 위해 속초-양화간에 대아고속해운(주) 한겨레호가 격주(화요일 속초 출항)로 운행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객 수송을 위해 속초-장전간을 운행하던 현대아산(주)의 설봉호는 2004년 1월부터 운행을 중단하였으나 횡수를 줄여 운행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항로 이외에는 국내 교역업체 등이 필요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적선을 용선하여 부정기로 운행하고 있다.

(2) 운행 횟수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제도가 시행된 1994년 7월에서 2003년말 까지 남북간 선박운행은 편도기준으로 11,007회이다. 이중 남에서 북으로의 운행이 4,688회, 북에서 남으로의 운행이 6,319회이다. 2003년에는 남에서 북으로 877회, 북에서 남으로 1,145회, 총 2,022회 운행하였다. 남한지역에서는 인천항, 부산항, 북한지역에서는 남포항, 나진항으로 선박운행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수산물 등의 수송을 위해 남한지역은 목호, 동해, 북한지역은 해주, 신의주, 홍남, 원산 등으로의 선박운행도 증가하고 있다.

남북간 선박운행 현황

(단위 : 회)

구분	1994.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남→북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798	877	4,688
북→남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1,029	1,145	6,319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11,007

(3) 물동량

1994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남북간의 물동량은 6,702천톤으로 이 중 남에서 북으로의 물동량은 4,663천톤이며 북에서 남으로의 물동량은 2,039천톤이다. 2003년에는 총 1,048천톤으로 남에서 북으로의 물동량은 841천톤이며 북에서 남으로의 물동량은 207천톤이다. 최근 남북 교역의 증가 뿐만 아니라, 식량차관, 비료지원 등으로 물동량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항구별로는 남한지역은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동해항, 북한지역은 나진항, 남포항, 흥남항, 해주항에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남북간 선박운행에 의한 물동량 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1994. 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남→북	7	281	148	361	396	781	547	402	899	841	4,663
북→남	131	346	188	250	162	203	156	239	157	207	2,039
계	138	627	336	611	558	984	703	641	1,056	1,048	6,702

다. 남북간 자동차운행

남북간 자동차운행은 2003년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개통과 함께 시작되어 경의선은 주로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수송, 개성공단 건설 인원·물자 수송, 남북 당국간 회담 참가 인원 수송을 위해, 동해선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2003년 9월 11일 정부는 임시도로 이용범위를 확대조치를 취하여 평양체육관 개관행사 참석인원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게 되었다. 2004년 상반기 경의

선 도로가 개통되면 남북간 물자 및 인원 운송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라. 남북간 항공기운행

남북간 항공기운행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남북 직항로를 최초로 운항한 이후 2003년말까지 총 240회로 운항하였으며, 2003년에는 평양관광객 수송 등 남에서 북으로 55회, 북에서 남으로 56회, 총 111회가 운행되었다.

남북간 항공기운행 현황

(단위 : 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계
남→북	20	8	33	55	116
북→남	23	11	34	56	124
계	43	19	67	111	240

III. 남북교역 절차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가. 북한주민접촉

(1) 접촉의 개념

남한의 주민이 북한과 어떠한 형태로든 교역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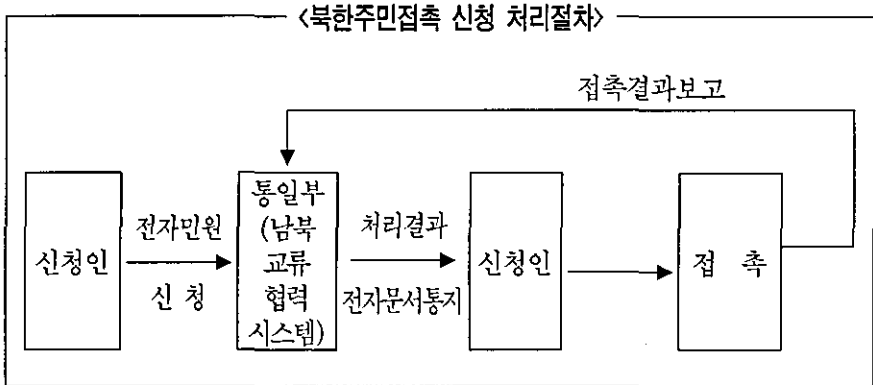
동 법에서 말하는 남한의 주민은 대한민국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의 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 뿐만 아니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또한 접촉의 기본적인 개념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된다.

특히 북한주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국 등 제3국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접촉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Telex, Internet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2) 북한주민접촉 신청



(가) 신청방법 및 처리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예정 15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제출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통한 전자민원 신청이 원칙이며,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 우편신청이나 대리신청도 무방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한주민접촉 신청처리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내에 처리되며, 그 처리결과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된다.(외국인의 경우 종이문서로 통지)

문서에는 접촉신청이 승인된 경우 접촉신청인, 피접촉인, 접촉목적, 승인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며, 불허의 경우에도 불허사유가 기재된다.

신청서 처리기간은 보통 15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

서 류 명	작 성 방 법
① 북한주민접촉신청서 ② 신원진술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③ 회사소개서 ④ 대북사업계획서 ⑤ 북한회사 소개서 ⑥ 중개상사 소개서 ⑦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사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⑥은 한글파일 작성후 업로드 - ⑦,⑧은 스캔받아 파일작성 후 업로드

(나) 신청서류 작성

북한주민접촉 신청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신청인 인적사항에는 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되며, △피접촉예정인 인적사항에는 신청자가 접촉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북한주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국 등의 대리인을 접촉하는 관계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북측의 회사명 정도만 기록해도 무방하다.

또한 1개 회사에서 2인 이상 동시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를 대표하여 1인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원진술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나머지 대상자도 추가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원진술서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을 양식에 있는 작성항목에 따라 직접 입력하고 우측 상단에 신청인 사진은 스캔받아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관련서류 첨부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회사소개서는 북한과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 회사에 대한 기초사항을 파악하여 그 회사가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로 소정 양식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2)대북 사업계획서는 신청회사가 북한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추진 경위, 사업분야 및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북한회사 및 (4)중개상사 소개서는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며, (5)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은 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은 후 그 사본을 스캔받아 파일로 업로드하며, (6)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스캔받아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다) 접촉결과 보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아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

접촉결과 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는 접촉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접촉결과보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결과보고를 하며, 통일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게시된 양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파일과, 기타 계약서 등 참고자료는 스캔후 작성된 파일을 관련 서류첨부에 각각 업로드하면 된다.

(라) 승인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된다. 승인 유효기간중에는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

서는 횡수에 제한없이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간 내에 소정의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북한측과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승인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접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류와 절차는 최초 신청때와 동일하다. 다만,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의 북한주민과 접촉한 내용 등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는 추가해야 한다. 또한, 비록 승인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당초 승인받은 접촉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역시 별도의 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후 신고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부득이 승인을 얻지 못하고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 5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접촉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 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사후신고 서식으로는 소정양식인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남북한 왕래

(1) 남북한 왕래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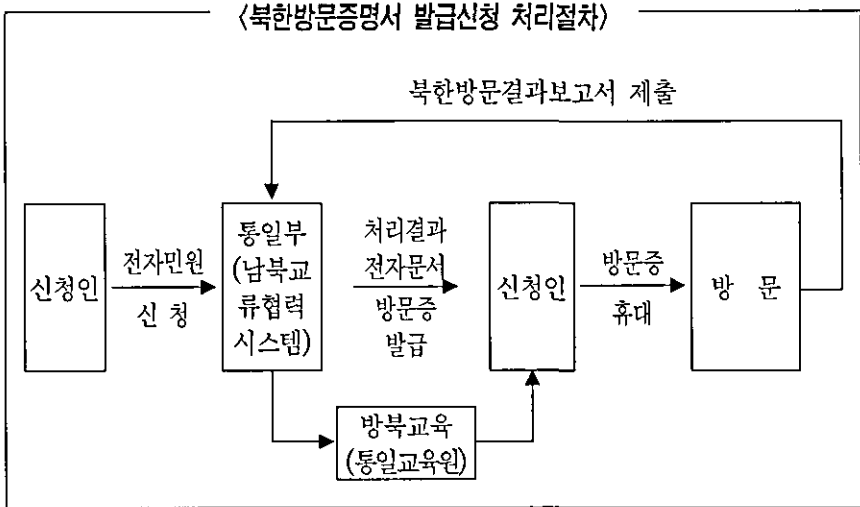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을 제9조 2항에 의해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남북한 왕래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신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조총련」 인사와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을 방문할 때는 <남한방문증명서> 대신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방문하여야 한다.

(2) 북한방문 절차



(가) 신청방법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통한 전자민원 신청이 원칙이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북한방문이 승인된 경우는 증명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방문목적, 방문기간, 신장, 방문증 발급일자 그리고 방문자 사진이 부착된 북한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북한방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

인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방문을 신청한 자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북한방문증명서가 전달된다.

북한방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신 청 서 류〉

서 류 명	작 성 방 법
①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② 신원진술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작성
③ 방북계획서 ④ 초청장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북측에서 발급한 서류 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 해당자에 한함	- ③은 한글파일로 작성후 업로드 - ④은 스캔본아 파일작성후 업로드 (원본은 직접제출)

(나) 신청서류 작성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경우 신청인 인적사항, 방문대상자 인적사항, 방문목적, 방문 예정일정, 방문 및 귀환 예정경로 등을 작성하며, 신원진술서는 북한주민접촉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방북계획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방북목적, 접촉인사, 추진사업 내용, 일정별 협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파일로 업로드 한다.

또한 초청장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것으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청장은 북한기관에서 발급되며, 초청목적, 초청기간, 피초청인,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된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는 군미필자(허가서)의 경우 해당지역 병무청에서, 군필자(신고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이다.

(다) 방문기간

방문기간은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내용에 따라 적정기간이 부여된다. 방문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방문기간 연장은 소정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최초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제출한 방문자는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장한 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북한방문증명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최초 신청때와 같다.

다만,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 동안의 방문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수시방북제도〉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1회 승인으로 1년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시방북 적용대상이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모든 기업인」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수시방북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방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북한방문 안내교육

북한을 방문하고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방문전에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문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문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안내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1:30-5:00(변경가능)에 실시된다.

(마) 출입심사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 공무원에게 소정의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이 이루어진다.

특히 휴대물품은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부고시)」에 따라 반입·반출이 금지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편의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에 소개되어 있다.

(바) 북한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

북한방문증명서가 분실되었거나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기타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북한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소정양식인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북한방문증명서 반납

북한방문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반납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는 출입장소(도라산·고성 남북출입사무소 등)에서 반납해야 하며,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에는 귀환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수시방북승인을 받은 자는 매 귀환시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며 방북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7일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 또한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반납할 수도 있다.

(아) 북한방문 결과보고

북한방문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북한방문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된 보고서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방북시 활동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 제출하면 된다.

(3) 남한방문 절차

남한방문절차는 원칙적으로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제반절차를 밟게 되므로 북한주민 초청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외에는 기본적으로 북한방문절차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신청서류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신청서류〉

- ①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 ②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세로 4.5cm)
- ③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④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⑤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법령에 의한 소정양식으로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작성한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주민초청과 관련된 행사계획서, 초청경위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등이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신청시 대리 신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4) 남북한 왕래의 형태

남북한 왕래의 형태는 왕래경로에 따라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육로왕래와, 정기선 또는 부정기선박을 이용한 해로 왕래, 부정기 운항 항공기를 이용한 공로 왕래와 제3국을 통한 왕래로 나눌 수 있으며, 제3국에서 북한을 거쳐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왕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판문점을 통해서 상대지역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로서, 왕래절차에 대한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가 있는 후 가능하게 된다. 과거 남북당국간 회담, 남북간 전통음악 교환공연을 위한 왕래가 이에 해당된다.

2003년 12월 24일 정식 개소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서 상대지역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로, 현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수송, 개성공단 건설 자재 수송, 금강산 육로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대표단 등 남북간 직접 왕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제3국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경우로서, 경유지로는 보통 중국(북경)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북한입국에 따른 별도의 수속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UNDP회의에 참가하는 남·북한 참석자들이 중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한 바 있다.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와 제3국을 경유한 남북한 왕래는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방문지에서 제3국을 통해 귀환하는 경우와 제3국을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하는 경우이다.

(5)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가) 재외국민의 범위

법 제9조제2항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북한방문은 사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 요건은 체류국의 관련제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재외국민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국가에 따라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며 장기체류허가의 요건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도 재외국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방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나)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남북교역

가.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을 말한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된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관세의 면제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며 반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3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미의 남북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입 외에도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연계교역」이라 함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교역을 말하며,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등을 포함한다.

「임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과, 가공임을 가득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가공

할 원부자재를 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중 위탁가공교역은 최근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교역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나. 남북교역의 당사자

남북교역(북한과 제3국간 물품의 중계무역 포함)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무역업고유번호가 부여된 업체(관계자)가 추진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면 남북교역을 할 수 있으나, 유통질서확립 또는 보건·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국내법체제에서 특수한 자격을 요구하는 품목을 교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취급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특수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예〉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 식품류 : 수입식품판매업 신고
- 주 류 : 주류수입(중개업) 면허 소지
- 북한도서 및 정기간행물 : 문화관광부 허가와 등록
- 삼산화 비소(Arsenic trioxide) : 독극물 수출입업 등록
- 한약재 :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소지

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남북간 교역물품은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과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으로 구분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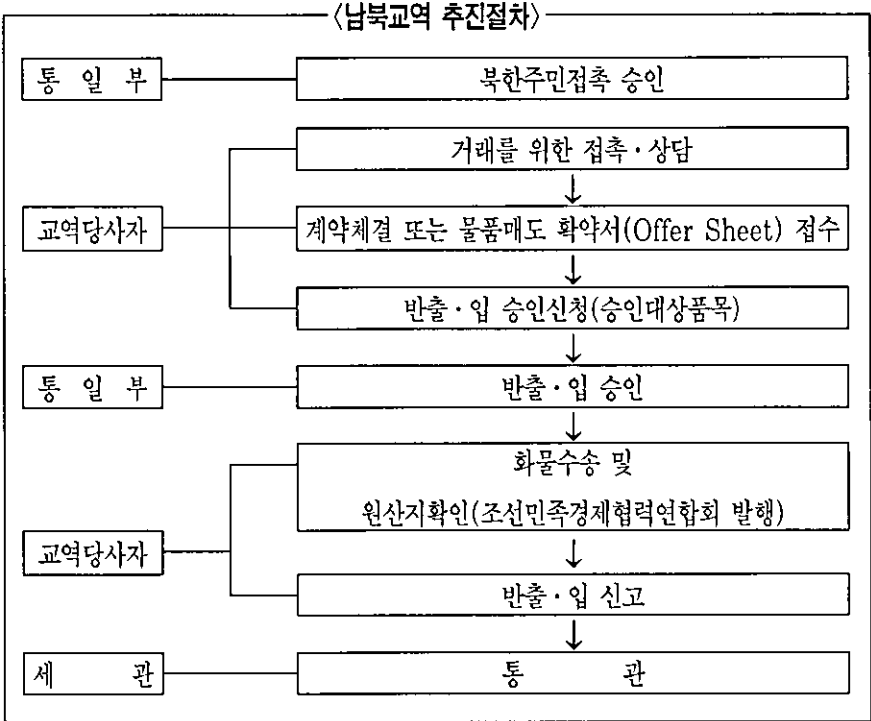
- ①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품목
- ②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비디오물을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 ③ 반입물품으로서 별표1에 계기한 품목
- ④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 ⑤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물품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다만,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 ⑥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⑦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2)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 ①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③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 ⑤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 ⑥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라. 남북교역 추진절차



(1) 접촉 및 상담

남북교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측 교역 당사자와의 접촉 및 상담은 거래 초기에는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일본·중국·싱가폴 등 제3국의 무역상·해외동포·한국상사의 제3국 현지법인 등이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교역이 진행된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한 접촉·상담경험과 거래과정을 통해 조성된 상호신뢰를 토대로 북한측 교역당사자와

직접 접촉·상담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 접촉·상담은 주로 중국 등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계 약

남북교역 당사자간의 계약형태 등에 따라 남북교역은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된다.

간접교역은 남한의 교역 당사자와 북한의 교역 당사자 사이에 중개인을 매개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로서, 현재 전체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9월 통일부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300여개 남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남북 교역당사자간 직접 계약하는 직접교역 업체수의 비율은 17.4%인 반면,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은 60.1%, 직접교역과 간접교역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교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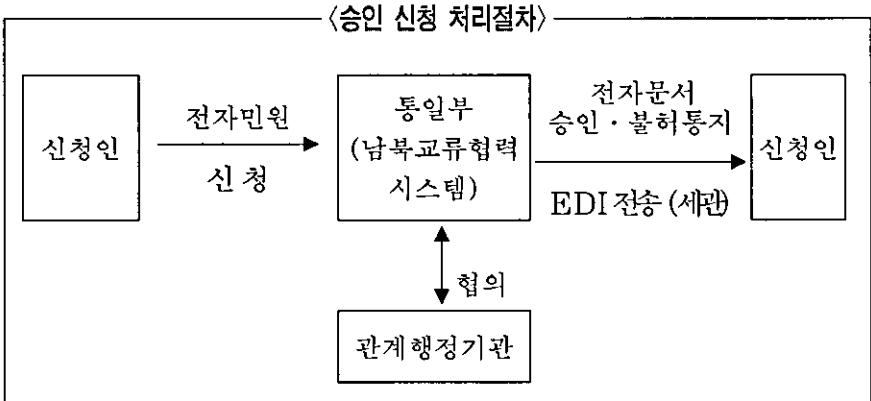
직접교역은 남북한의 교역 당사자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되는 형태로, 현재로서는 교역 분쟁발생시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2003년 8월 20일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가 발효되고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위협요인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직접교역을 바람직한 남북교역의 형태로 보아 이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승인여부 검토나 통관시 원산지 확인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은 2003년 8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한간 직거래 확대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중에 개성공단에 직교역을 위한 경제협력 협의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같이 직접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남북간 직접교역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반입·반출 승인(승인을 요하는 품목)



(가) 반입승인

북한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입물품이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의거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중 금액의 변경(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금결제방법, 승인유효기간연장, 승인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한편,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반입신청 접수시 통일부에서는 당해 품목의 과다공급에 따른 국내시장 교란 가능성, 국내 생산자 보호 측면에 대한 고려, 반입가격의 적정성, 남북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기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반입품목 결정시 이들 기준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반입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① 북한물품 반입승인신청서(소정양식)
- ②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 ③ 반입대행 계약서 (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 ④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 (해당자)
- 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한물품반입 관련내역서(소정양식),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북한주민 접촉결과보고서(소정양식)

(나) 반출승인

반출의 경우에도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반출품목은 대부분 반출 포괄승인품목으로 되어 있어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출신고시 세관에 동 물품이 북한에 반출(제3국 단순경유 포함)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반출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① 반출승인신청서(소정양식)
- ②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 ③ 반출대행계약서 (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
- ④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한물품반출 관련내역서(소정양식),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북한주민 접촉결과보고서(소정양식)

(다) 반출입승인

반출, 반입이 연계되어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대응물품이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때에는 반출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출입 혼합 거래 형태로는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물물교환, 구상교역, 대응구매)과 중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이 있다.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승인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하나의 계약서로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를 보면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남한 물품을 반출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의 물품을 반입하는 형태의 물물교환이 있으며, 일부 위탁가공교역도 반출입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반출입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① 반출입승인신청서
- ② 반출·반입계약서 (하나의 계약서)
-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 추가
- ③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
- ④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반입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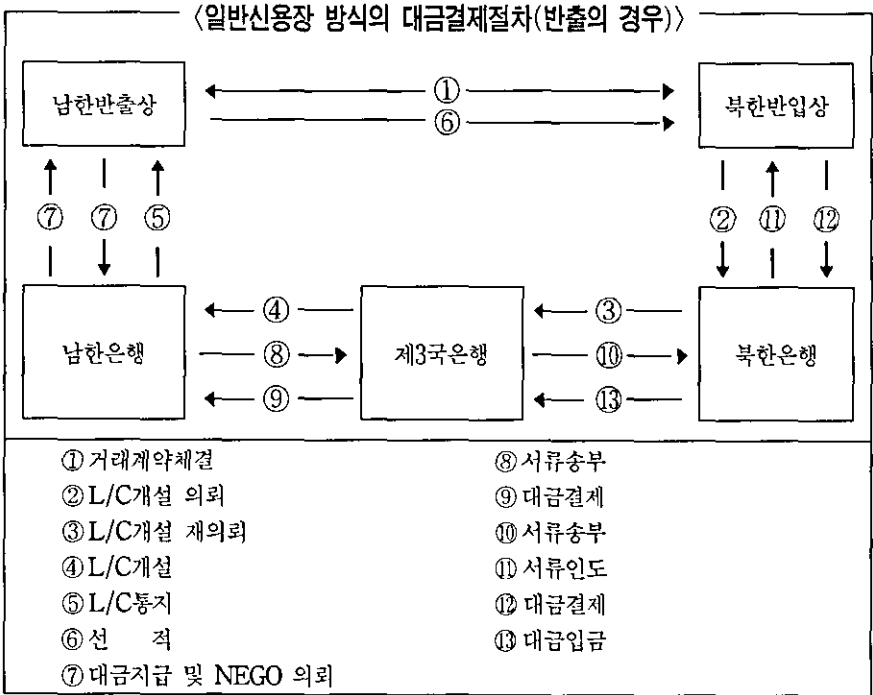
(4) 대금결제

남북간에는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제8항에서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20일 발효된 남북청산결제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진행중이어서 조만간 청산결제 방식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교역에 있어서의 대금결제는 일반 수출입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고 있는 결제방법과 결제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남북교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은 제3국은행을 통한 송금환(T/T) 방법이며, 이밖에 기타 신용장(L/C) 방식이나 물물교환(Barter Trade), 직접 현금지급 등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금결제 방법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 방법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교역품목이 포괄승인품목 일지라도 대금결제방법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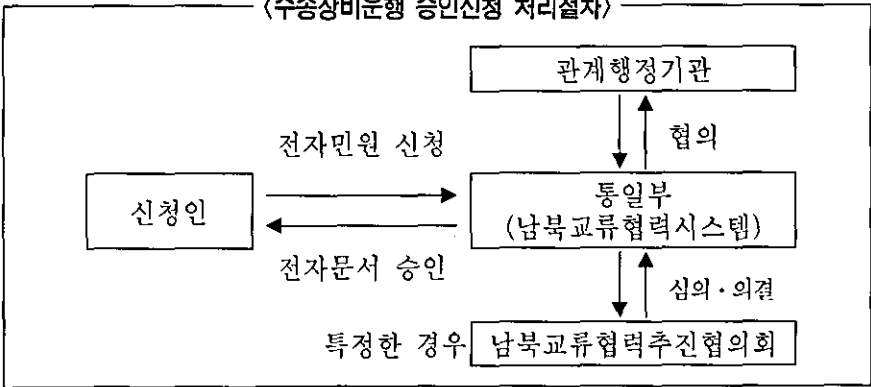


(5) 수 송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및 영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과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에 의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한주민(법인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포함)도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대상이 되고, 제3국 항구를 경유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 처리절차〉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이며,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류〉

▲ 자동차·항공기·철도차량 운행승인 신청

- ①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운행계획서(운행경위 포함) 1부
- 운행일자, 운송경로, 수송화물내역, 화주 등 기재
- ③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내역서 1부
- ④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⑤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대리신청의 경우)
- ⑥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선박 운행승인 신청

- ① 선박운행승인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운행계획서(운행경위 포함) 1부
- 운행일자, 운송경로, 수송화물내역, 화주 등 기재
- ③ 선박제원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원명부
- ④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⑤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화물 운송사업) 사본
- ⑥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대리신청의 경우)
- ⑦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참조

(6)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남북교역물품 통관절차는 대부분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준용하여 처리되고 있으나(양식도 일반수출입신고서 사용),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중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비과세함에 따라 원산지 확인 절차가 부수되는 점이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와 다르다.

(가) 반입물품통관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의 반입통관 절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준용하므로,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관세청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북한산 물품의 경우 관세가 비과세 처리됨에 따라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전량검사 후 면허처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직반입한 물품의 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 반입승인서(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 가격신고서(invoice, 보험증서 포함)
- 선하증권사본
- 최근 2개월간의 선장확인 선박항해일지
- 원산지증명서(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발행)
- 기타 검역물품인 경우 당해 검역증(식품인 경우 식품검사 합격증) 및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아울러 제3국을 단순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직반입한 경우의 제출서

류에서 선하증권 사본, 선박항해일지를 아래와 같은 서류로 바꿔서 제출하면 된다.

-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 일체
- 제3국의 세관 등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단순경유증명서

(나)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원산지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생산된 지역 즉 「상품의 국적」을 뜻한다. 원산지는 생산과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생산」은 채취·가공·제조 등 상품의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원산지증명서의 수록내용 및 인정기준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2003.9.29 제정, 통일부고시 제 2003-4호)에 나와있는 남북교역물품용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북측은 우리측에 통보한 「민경련」 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송하인, 수하인 등은 수입승인서(또는 반입승인서)상의 송하인과 일치해야 하고 당해 물품

의 수량·중량도 수입승인서(반입승인서)상의 수량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유규명을 위한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한다.

□ 사용언어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발급기관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03.9.29 발효)를 채택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남한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발급하게 되었다.

□ 인정기준

남한과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은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등이다. 세부 원산지 판정·확인기준은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으며, 우리 내부적으로는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비과세 인정기준〉

북한과의 교역은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시 관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모두 관세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산지가 북한임은 물론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반입(제3국 단순경유 포함)된 물품이어야 한다.

□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은 물품

북한산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에 의거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과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으로 구분되어 있다.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은 통일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입될 수 있으며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은 개별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이외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대해서는 통관시 남북교역 대상물품을 신고하면 비과세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 대상 물품중 통상적인 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품의 견본 등을 반입할 때는 상기의 반입 승인서는 필요없고 북한산

물품 반입사유서 및 그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비과세 통관도 가능하다.

□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관세 비과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북한이어야 하며, 반입통관시 세관에 이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반입된 물품의 원산지확인 방법은 ① 북한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②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③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치 않아도 북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14조)

-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개인용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되었거나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반입된 물품

• 직반입된 물품의 확인방법

운송선박이 출항시 신고한 국가로 실제 운항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하증권상의 운송목적지와 실제운송 경로가 상이할 수밖에 없어, 통관시에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과 당해 선박의 최근 2개월간의 기항증명서(ports of call) 및 선박항해일지(voyage memo)에 의해 당해선박의 북한입항 여부와 당해 물품의 북한선적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하여 주고 있다.

• 제3국 단순 경유물품

단순경유라함은 운송상의 이유 등에 의해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한 물품이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후 국내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도 비과세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3국 단순경유 여부 확인방법은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에 의거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제3국에서 환적·일시장치 등으로 단순경유하였음을 제3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 확인한다.

(다) 반출물품 통관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수출품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레이더, 고성능컴퓨터, 야간투시경 등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지원부고시)」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의 부정유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7) 관세 등

(가) 관 세

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운송(제3국 단순경유 포함)된 반입물품중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직운송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물품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나) 내국세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 등 내국세는 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시 과세표준에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은 일반수입 물품과 같이 「관세평가시행세칙」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된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실제 지불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관세환급

일반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이를 환급한다.

마. 위탁가공교역

(1) 위탁가공교역 개요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은 가공임지급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의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동가공제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교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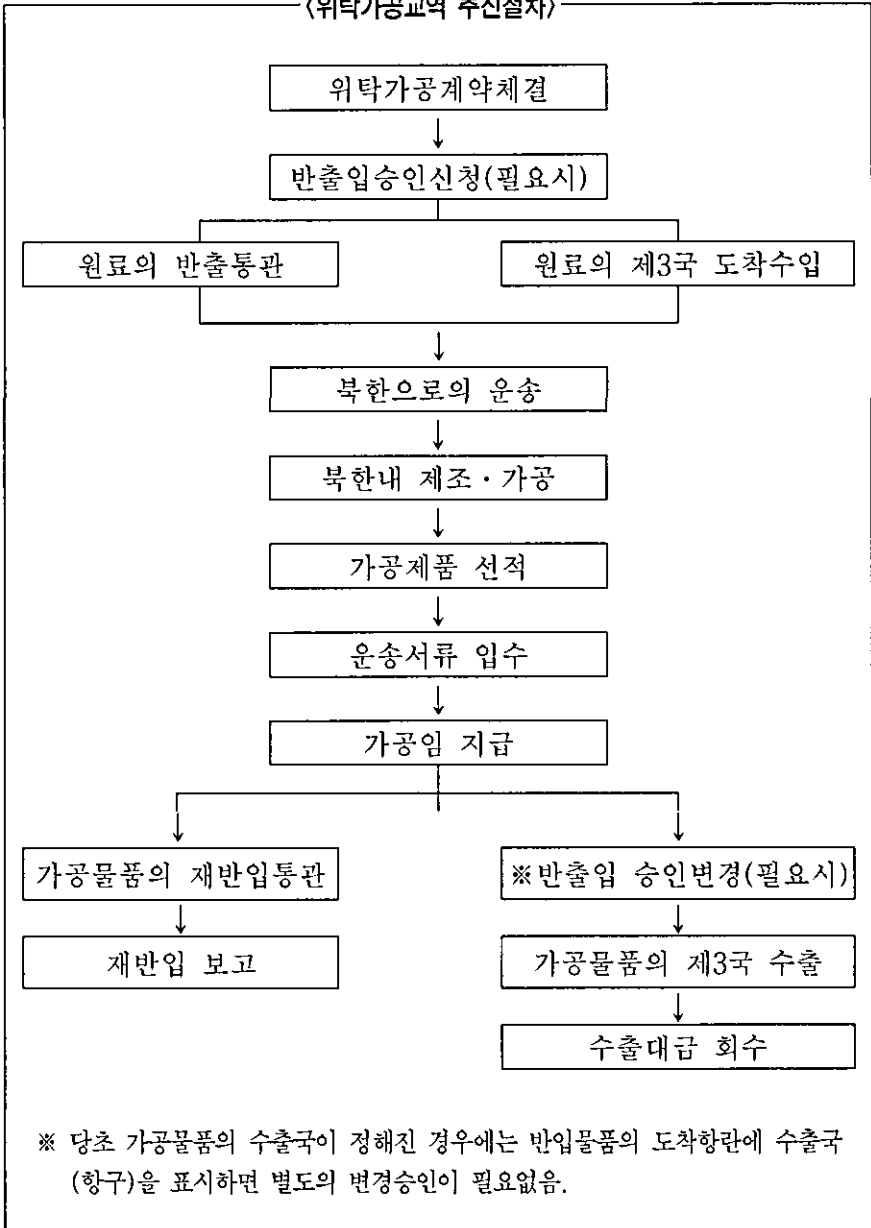
(2) 반출입 승인절차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교역은 일반물품 반출·입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다만, 시설재를 공급하는 위탁가공교역에 있어 기계·장치·설비 공급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으로 보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3조)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무상반출입 등 거래형태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위탁가공교역에 있어서는 승인절차 없이 반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은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위탁가공교역 추진절차〉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한주민이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가. 기금대출 개요

(1) 대출종류

-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
- 반출·반입자금대출 : 북한으로 교역대상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하거나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

구 분	거 래 형 태
반출·반입 거래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 포함)
위탁가공 거래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 및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

(2) 기금대출의 특성

남한주민의 소요자금을 지원해 주며, 여타 시중금리보다 저리(별도의 비용부담 없음)로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및 신용대출 우대 등 중소기업 을 우대하고, 대출승인시 금리가 고정되는 원화표시 대출제도이다.

나. 기금대출 대상

(1) 신청요건

-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남북교류협력법상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남한주민
- 반출·반입자금대출 :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

(2)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 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및 어업분야의 경제협력사업 시행자 -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 시행자
반출·반입 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용 종자·농자재를 반출하고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가공용 어선·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 유희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3) 대출제외대상

-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담보제공시에는 대출 가능)
-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담보제공시에는 대출 가능)
- 본 대출 이외에 타 금융자금으로부터 중복하여 대출을 받은 자

다. 지원 조건

(1)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가) 대출금액 :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80%(우선지원대상 90%) 이내
 - (나)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
(사업성격에 따라 3년 이내 거치 가능)
 - (다) 대출이자율 : 76쪽 「대출이자율」 면 참조
 - (라)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 (마) 채권보전 : 담보 또는 신용(신용도와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 (바)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경우
 -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 * 대기업집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출자총

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철도,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2) 반출·반입자금대출

(가) 대출금액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	계약금액에서 기수령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80%(우선지원대상 90%) 이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설비 반출자금대출	소요자금의 80%(우선지원대상 90%) 이내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	반입금액(선급금과 운임·보험료 포함)의 80% (우선지원대상 90%) 이내

(나) 대출기간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 물품 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제3국 수출시에는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내 거치가능)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 대출이자율 : 76쪽 「대출이자율」 면 참조

(라)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마) 채권보전 : 담보 또는 신용(신용도와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라. 실적한도대출

지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남북 교역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기간(6개월)의 교역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포괄금융방식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 대출대상 : 반출·반입자금대출 거래

(2) 대출금액 : 10억원 이내에서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이내

※ 단,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한 경우 30억원까지
가능

남북교역 시행기간	남북교역실적 인정비율
최근 5년이내에서 3년이상	교역실적의 70% (중소기업 80%)
최근 5년이내에서 3년미만	교역실적의 50% (중소기업 60%)

주) 교역실적 : 최근 1년간 반출입실적 합계의 1/2

(3)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채권보전이 확실한 경우 1년까지 가능

(4)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5)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 대출집행후 매 6개월마다 대응 남북 교역이행실적을 확인하여 재대출시 반영

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

(1) 단기 반출·반입거래의 특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성 반출입거래에 대하여는 신용대출 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거래 :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반출입거래
- 대 상 자 :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자
 - 결산 3기 이상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서 2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고,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5만달러 이상일 것
 -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한 재무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것
- 신용대출한도 : 30억원. 단, 차주 순자산의 20%~60% 범위이내

(2) 북한소재자산 제공시의 특례

북한에 소재하는 자산을 첨단보*로 제공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일정비율을 신용대출로 한다.

* 첨단보 : 주담보를 보완하는 담보로 그 자체가 담보권은 아님

- 대상거래 : 경제협력사업 및 반출·반입 거래

- 대 상 자 :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자
 -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 1년 이상 대북거래 경험이 있을 것(원부자재 반출거래의 경우)
 -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
 - 경영자의 개인자격 연대입보 또는 제3자의 연대입보가 있을 것
 - 추가 요건(경제협력사업의 경우)
 - 사업성이 양호할 것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대비 3배 이내일 것
 - 자기자본회전율이 동종업계 평균대비 1/2 이상일 것
- 대상자산의 범위 : 해당기업이 투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토지이용권·건물, 기계설비, 원부자재
 - 북한당국(또는 계약상대방)의 소유권 인정
 - 토지이용권·건물의 경우에는 북한기관에 저당권 등록
 - 북한당국(또는 계약상대방)의 저당권(또는 양도담보권) 행사 보장
 - 차주의 원부자재(기계설비) 양도담보계약서 제출
 - 차주의 저당권(또는 양도담보권) 관리의무 수행
 - 기타 기금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취득요건 구비
- 신용대출한도 : 해당자산 잔존가치*의 10%~50% 범위이내
단, 차주 순자산의 50%~70% 범위이내
 - * 토지이용권은 임대료, 건물·기계설비는 잔존가치, 원부자재는 구입가 적용

(3) 북한소재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제공시의 특례(실적한도대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와 관련하여 실적한도대출시 아래의 조건으로 신용대출한다.

- 포괄양도계약 체결 : 국내외 원부자재(북한소재 원부자재 포함)
- 신용대출인정비율 : 전년도 원부자재 반출실적의 1/4 이내
- 대출기간 : 제품 반입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4) 부분신용보증서 제공시의 특례

부분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경우 해당 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증금액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한다.

- 부분신용보증서 : 남북협력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서 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80% 이상일 것
- 대상거래 : 대출기간이 1년 이내인 반출입거래
- 대 상 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인 자
- 신용대출한도 : 기업당 5천만원 미만.
단, 차주 순자산의 40% 이내

바. 대출이자율

남북협력기금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북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 고정금리로 운용

(2) 대출이자율의 결정체계 : 기준금리 + 신용위험가산율

(3) 기준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표에 해당하는 국고채 기간물*의 유통수익률

대출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초과
국고채 기간물	6월 물	1년 물	3년 물

* 신청접수일 전원의 평균 유통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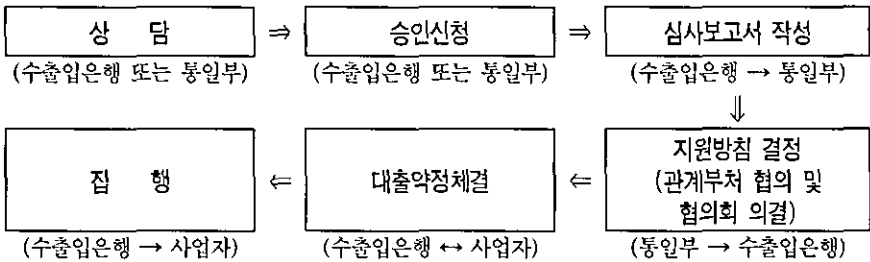
(4) 신용위험가산율 : 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 $\Delta 1.0\% \sim 0.5\%$

구분	신용위험가산율
지급보증	$\Delta 1.0\%$
물적담보	$\Delta 0.5\% \sim 0\%$
신용대출	$0\% \sim 0.5\%$

(5) 중소기업 우대 : 최종 대출이자율에서 0.5% 포인트 차감 적용

사. 대출절차 및 구비서류

(1) 대출절차



※ 단, 기금관계법규에 부합하는 아래 대출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 생략

-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건당 50억원 미만
- 반출·반입자금대출 : 건당 30억원 미만

(2) 구비서류

대출승인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 이사회기재결의서 사본 -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증명원) - 기타 필요서류(유휴설비 성능검사서 등)
대출집행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 및 자기자금 사용(예정)명세서 - 기타 필요서류(대출거래약정서, 소요자금 증빙서 등)

남북협력기금 대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p>■ 통일부 교류협력국 협력기금과</p> <p>전 화 : (02) 720-2146 팩 스 : (02) 3703-2443 홈페이지 : http://www.unikorea.go.kr</p>	<p>■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부</p> <p>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전 화 : (02) 3779-6633, 6635, 6640, 6711 팩 스 : (02) 3779-6758 홈페이지 : http://www.koreaexim.go.kr</p>
---	---

<지점>

지 점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부 산 지 점	(051)817-5050	(051)817-6060
대 구 지 점	(053)754-1021	(053)754-1020
광 주 지 점	(062)232-6944	(062)232-6946
인 천 지 점	(032)235-6114	(032)235-6120
강 남 지 점	(02)6248-6114	(02)6248-6119
창 원 지 점	(055)287-6830	(055)287-6831
대 전 지 점	(042)862-1021	(042)862-1030
수 원 지 점	(2004년 3월 개설 예정)	

<부록 1>

■ 전자민원 신청 안내 및 서식	81
1. 북한주민접촉	81
2. 북한 및 남한 방문	93
3. 교역물품 반출·입	102
4. 수송장비 운행	118
■ 서류민원 신청 관련 서식(외국인 등 사용)	126
1.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방문	126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 운행	139
■ 자금대출 신청서	154

■ 전자민원 신청 안내 및 서식

※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접속 후 우선 사용자등록(ID)을 한 다음, 해당 민원메뉴를 찾아서 신청하며, 처리상황(확인요망, 처리중, 승인 등)은 MY PAGE에서 확인 가능함. 승인공문은 처리상황란의 “승인”을 더블클릭하여 출력·활용함.

*유의! : 도구-인터넷옵션-보안설정(최저단계로 설정) 및 한글2002가 설치된 경우에만 승인공문 출력 가능함.

1. 북한주민접촉

가. 북한주민접촉 신청 : 접수일로부터 15일(처리기한), 승인기간(3년 이내)

(1) 북한주민접촉 신청 : 신청인 인적사항을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2) 신원진술서 : 신원진술서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및 사진 업로드

* 사진 업로드 : 증명사진을 스캔 받아 파일(.jpg)로 저장한 후, 신원진술서상 파일업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 사진 파일을 찾아 지정후 확인버튼을 누름.

※ 해당자는 모두 작성 : 신원진술서 메뉴를 클릭하면 새로운 신원진술서가 펼쳐지며 추가로 작성 가능함.

- 회사대표(필수), 해당직원(선택)

(3)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① 회사소개서, ② 대북사업계획서, ③ 중개회사 소개서
- ④ 북한회사 소개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 *무협협회에 신고하면 동 번호부여서 발급

※ 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의 전자민원창구-민원마당에서 관련 서식 내려받기 및 작성 (①~④) 및 스캔 후 파일작성(⑤~⑥)

나.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결과보고는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은 후, 매 접촉시 1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1)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 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의 전자민원창구-민원 마당에서 관련 서식 내려받기 및 작성
- 기타 합의서(계약서) 등 : 스캔 후 파일 작성

북한주민접속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북한주민접속 안내
- 북한주민접속 신청
- 신청진술서
- 관련서류 첨부
- 북한주민접속결과 보고

• 신청진술서

업로드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접속신청서 신청번호 [신청번호선택] 에 대한 신청진술서

신청진술서 검색

성명(한글)	<input type="text"/>	사 진
성명(한자)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호주	<input type="text"/>	
호주와의 관계	<input type="text"/>	*파일업로드
원칙	<input type="text"/>	
본직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직장명	<input type="text"/>	
소재지	<input type="text"/>	
전화번호	가정 <input type="text"/>	
	직장 <input type="text"/>	
분과	<input type="text"/>	
종교	<input type="text"/>	
업역형	<input type="text"/>	
신장	<input type="text"/> Cm	
체중	<input type="text"/> Kg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동산 <input type="text"/> 만원	
	부동산 <input type="text"/> 만원	
친정자 재산	동산 <input type="text"/> 만원	
	부동산 <input type="text"/> 만원	
특기	<input type="text"/>	
위마	<input type="text"/>	
	단체명 <input type="text"/>	
	직책 <input type="text"/>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가입일자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가입동기 <input type="text"/>	
	활동일자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활동이유 <input type="text"/>	

영역: 군별
 병과
 최종계급
 군번
 기간: 년 월 일 부터
 (부터 ~까지) 년 월 일 까지
 미필사유

• 북한 및 해외 거주가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직장및직위	거주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교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보증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학력

입학창 개수설정 건
 학교명 기간(~부터~까지) 전공학과 졸업학위 소지지

• 경력

입학창 개수설정 명
 업체/기관명 기간(~부터~까지) 직책(직급) 상용관계(일자)

• 가족사항

입학창 개수설정 명
 구분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및직위 거주지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북한주민접촉 안내
- 북한주민접촉 신청
- 신청안내서
- 관련서류 첨부
- 북한주민접촉결과 보고

● 관련서류 첨부

알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첨부할 신청서와 신청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북한주민접촉신청서 북한주민접촉보고서

신청번호선택 ▼ 에 대한 관련서류첨부

파일 1	문서영		찾아보기...
파일 2	문서영		찾아보기...
파일 3	문서영		찾아보기...
파일 4	문서영		찾아보기...
파일 5	문서영		찾아보기...

● 북한주민접촉결과 보고

알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접촉신청서 승인번호 승인의용번호 ▼ 에 대한 접촉 결과 보고서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직장연락처

접촉목적

접촉일시 년 월 일

접촉장소

접촉경위

접촉방법

접촉결과개요

● 피접촉인 연락처(복수)

피접촉인 인원 명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주민접촉신청시 첨부서류
(#1)

회사 소개서

회 사 명	
설 립 일	
대 표 자	
직원현황	
자 본 금	
매 출 액	
사업내용	

작성자(소속·성명·연락처)

(#2)

대북사업계획서

사업추진경위	
추진분야 (임가공·교역 등)	
사업내용 (일정, 품목, 규모 등)	
사업성 판단	
향후계획	

작성자(소속·성명·연락처)

(#3)

중개인(상) 소개서

중개인(상)명 (영문명)			
소재지 (주소)			
전신약호		T L X	
전 화		F A X	
관련직원 (직위, 성명)			
취급품목			
특 징 (남북교역 중개관련 특기사항)			
거래상사	남 한		
	북 한		
회사와의 관계 (거래동기, 접촉경위, 중개실적 등)			
참고사항 (북한과의 관계 등)			

작성자(소속·성명·연락처)

(#4)

북한회사 소개서

회 사 명			
상부 소속기관 또는 회사			
소 재 지 (주 소)			
전 화		F A X	
총 사 장 (나이, 성명)			
직 원 (성명, 직책 등)			
취급품목			
회사와의 관계 (거래동기, 접촉경위 등)			

작성자(소속·성명·연락처)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첨부자료

(#5)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접촉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시고 분량은 접촉결과 내용에 맞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사항

가. 접촉인 인적사항

.
.

* 접촉인의 성명·소속 및 직책·주민등록번호를 기록

나. 피접촉인 인적사항

.
.

* 접촉한 북한주민(또는 중개인)의 인적사항(성명·소속 및 직책·나이 등을 기록)

다. 접촉일시 및 장소 : 200 년 월 일 ~ 월 일,
장소

라. 접촉목적 및 경위

- 북한주민(또는 중개인)을 접촉하게 된 목적·배경·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직접접촉 또는 중개인·FAX등 송·수신 방법 등

2. 주요 접촉내용

- * 북한주민과 접촉시 협의·상담·조사내용을 자세하게 기록

가.

○

○

.

.

- * 협의 관련서류 또는 자료 첨부

3. 기타 참고사항

- * 북한측 반응, 정세관련 사항, 접촉소감 등을 기록

4. 향후 추진계획

○

○

○

2. 북한 및 남한 방문

가.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처리기한)

- (1)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인 인적사항을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신원진술서 : 신원진술서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해당자는 모두 작성) 및 사진 업로드
- (3)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① 방북계획서(임의양식) : 방북예정자, 방북일정, 방문목적, 피접촉인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작성후 파일(.hwp)로 첨부
 - ② 초청장(신변안전보장 및 무사귀환 보장 포함): 스캔후 파일(.jpg)로 첨부
※ 초청장 원본은 직접 제출
- (4) 참고사항
 - ① 방북예정자 교육(통일교육원, 매주 화요일 13:30-17:00)
 - ② 북한주민접촉승인은 사전에 반드시 받아야 함.

나. 북한방문 결과보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북한방문후, 결과보고는 10일이내 보고(7일이내 방문증명서 반납)

- (1)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북한방문결과보고서(임의양식),
 - 기타 합의서(계약서) 등

다.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1)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사유서(임의양식)

라. 방문유효기간 연장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1)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사유서(임의양식)

마. 남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참조

바. 북한방문 신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1)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초청장
 - 방북계획서(임의양식)
 - 방문증

복합주민등록

복합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복합방문증명서 발급신청

- 복합 및 남한방문 안내
- 복합방문증명서발급 신청
- 남한방문증명서발급 신청
- 신청진술서
- 관련서류 첨부
- 복합방문규과 보고
-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
- 방문유출기간 연장신청
- 복합방문 신고

업감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X 방문증명서 부착용 방문합판 사진(뒷면 인적사항 기재) 1매는 우편등의 방법으로 별도 제출

[처리기간 : 20일]

•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한글) 홍길동
 성명(한자) 홍길동
 성별 남자 여자
 신장 Cm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연락처
 방문목적
 방문경위 (초청장 방문일선 및 중개인 포함)
 방문예정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방문지역
 방문일 귀환 예정일
 방문종합 (과거 3년 이내)
 신청과

• 방문대상자 인적사항(복속)

방문대상자 인원 명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 동반자녀

동반자녀 인원 명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확인 취소

북한주민전속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북한 및 남한방문

- ▶ 북한 및 남한방문 안내
- ▶ 북한방문증명서발급 신청
- ▶ 남한방문증명서발급 신청
- ▶ 신원전송서
- ▶ 관련서류 첨부
- ▶ 북한방문결과 보고
- ▶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
- ▶ 방문유료기간 연장신청
- ▶ 북한방문 신고

●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업장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방문증명서 부착용 반출입관 사진(뒷면 인적사항 기재) 1매는 우편통의 방법으로 별도 제출

[처리기간 : 20일]

• 신청인 연혁사항

성명(한글)

성명(한자)

성별 남자 여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출생지

신장 Cm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

직위

연락처

방문목적

방문경위
(초청장, 방문일선 및 중개인 포함)

방문예정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방문지역

방문 목적 기관 예정문

방문경험
(과거 3년 이내)

신청과

• 방문대상자 연혁사항

방문대상자 인원 명

성명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거주지

• 동반자녀

동반자녀 인원 명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행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신원진술서

알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북한주민접촉 안내
- 북한주민접촉 신청
- 신원진술서
- 관련서류 첨부
- 북한주민접촉결과 보고

접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번호선택 해당 신원진술서
 신원진술서 검색

성명(한글)	<input type="text"/>	사 진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업로드"/>
성명(한자)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호주	<input type="text"/>	
호주와의 관계	<input type="text"/>	
원적	<input type="text"/>	
본적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직업명	<input type="text"/>	
소재지	<input type="text"/>	
전화번호	가정 <input type="text"/> 직장 <input type="text"/>	
분과	<input type="text"/>	
종교	<input type="text"/>	
별명	<input type="text"/>	
신장	<input type="text"/> Cm	
체중	<input type="text"/> Kg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동산 <input type="text"/> 만원 부동산 <input type="text"/> 만원	
친권자 재산	동산 <input type="text"/> 만원 부동산 <input type="text"/> 만원	
특기	<input type="text"/>	
취미	<input type="text"/>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단체명 <input type="text"/> 직역 <input type="text"/> 가입일자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가입동기 <input type="text"/> 탈퇴일자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탈퇴이유 <input type="text"/>	

▶▶▶ **부모교육의 실무안내** ▶▶▶

연도

구분

연도

연월

최종계급

구분

기간 (부터 ~까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미필사유

• **특한 면 해외 거주가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직장및직위	거주지

• **교우**

• **보증인**

• **학력**

입력항 개수 설정 0 건

학교명 기간(~부터~까지) 전공학과 졸업학위 소재지

• **경력**

입력항 개수 설정 0 건

업체/기관명 기간(~부터~까지) 직책(직급) 상용관계(일자)

• **가족사항**

입력항 개수 설정 0 명

구분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및직위 거주지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 북한 및 남한방문 안내
-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 ▶ 남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 ▶ 신원진술서
- ▶ 관련서류 첨부
- ▶ 북한방문결과 보고
- ▶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
- ▶ 방문유료기간 연장신청
- ▶ 북한방문 신고

● 관련서류 첨부

업로드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첨부할 신청서와 신청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북한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방문유료기간 연장신청서
 북한방문 결과 보고서
 북한방문신고서

신청번호선택 에 대한 관련 서류첨부

파일 1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2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3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4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5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확인 취소

● 방문결과 보고

업로드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방문증명서 승인번호 에 대한 방문 결과 보고서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직장연락처
 방북목적
 방북일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장소
 방북경위
 방북방법
 방북결과 개요

● 회진속연 협력사항(특약)

파견속연 인원 명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취소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 북한 및 남한방문 안내
- ▶ 북한방문증명서발급 신청
- ▶ 남한방문증명서발급 신청
- ▶ 신원진술서
- ▶ 관련서류 첨부
- ▶ 북한방문경과 보고
- ▶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
- ▶ 방문유효기간 연장신청
- ▶ 북한방문 신고

●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5일]

● 방문증명서 승인번호 [승인번호조회] 에 대한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성명(한글)

성명(한자)

성별 남자 여자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방문지

재발급 사유

● 방문유효기간 연장신청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14일]

● 방문증명서 승인번호 [승인번호조회] 에 대한 방문기간 연장신청서

성명(한글)

성명(한자)

성별 남자 여자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방문지

연장기간 일

연장 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장 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장 사유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북한방문 신고

- ▶북한 및 남한방문 안내
- ▶북한방문증명서발급 신청
- ▶남한방문증명서발급 신청
- ▶신원전술서
- ▶관련서류 첨부
- ▶북한방문결과 보고
-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
- ▶방문유호기간 연장신청
- ▶북한방문 신고

알림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7일]

▶ 방문증명서 승인번호 에 대한 북한방문 신고서

신고자	성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방문 증명서 번호	<input type="text"/>	
방문목적	<input type="text"/>	
방문기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부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방문경로	<input type="text"/>	

▶ 방문대상자 연직사항(복측)

방문대상자 인원 명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직위

3. 교역물품 반출·입

가. 북한물품반입승인 신청 : 접수일로부터 20일(처리기한), 승인기간(3월이내)

- (1) 북한물품반입승인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각종 계약서 등은 스캔 받아서 파일(.jpg) 업로드
 - (가)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나)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경우)
 - (다)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해당자)
 - (라)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①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 ④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 ⑥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소정양식)
- ※ 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의 전자민원창구-민원마당에서 관련 서식 내려받기 및 작성(①,⑥), 파일 업로드
- (마) 제3국경유 사유서(포괄승인 품목을 제3국 경유하여 반입시)
 - 작성후 파일 업로드(임의양식)

나. 대 북한물품반출승인 신청 : 접수일로부터 20일(처리기한), 승인기간(3월이내)

- (1) 북한물품반출승인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각종 계약서 등은 스캔 받아서 파일(.jpg) 업로드
 - (가)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나) 반입대행계약서(반출자와 위탁자가 다른경우)

(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①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 ④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 ⑥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소정양식)

다. 반출·입 변경승인 신청 : 접수일로부터 20일(처리기한), 승인기간
(3월이내)

- (1) 반출·입 변경승인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각종 계약서 등은 스캔 받아서 파일(.jpg) 업로드
 - (가) 변경계약서
 - (나)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 작성후 파일(.hwp)로 첨부(임의양식)
 - (다) 선적 확인서

라. 교역보고 : 통관완료후 10일이내

- (1) 교역보고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스캔 받아서 파일(.jpg) 업로드
 - (가) 통관확인서 등

북한주민전속

북한 및 남한방문

현역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교역물품 반출입 안내
- 대북한물품반출 승인신청
- 북한물품반입 승인신청
- 교역 보고
- 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
- 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
- 관련서류 첨부

◆ 대북한물품반출 승인신청

알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20일]

● 북한물품반출 승인신청서

반출자	상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무역업 허가번호	<input type="text"/>
위탁자	상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사업자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원산지	코드	<input type="text"/> 원산지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선적할	코드	<input type="text"/> 선적항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도착할	코드	<input type="text"/> 도착항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수취인	<input type="text"/>	
대금결제 방법	<input type="radio"/> 신용장 <input type="radio"/> 추심어음 <input type="radio"/> 송금한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금액	<input type="text"/> 단위 : <input type="text"/> (USD) <input type="button" value="▼"/>	
결제기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부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까지	
가격조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input type="button" value="▶"/> 가격조건 코드 'CNF' -> 'CFR']	
승인조건	<input type="text"/>	
신청과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물품 분류가 100개용 초과일 경우에는 동공압력 없이 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 하세요!
 신청이 완료된 후 Mypage > 신청내역의 여실과입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물품내역을 입력해서 다시 업로드 하주세요.

● 물품명세

물품계수 [잘못된 '단위코드'는 자동 삭제됩니다.]

HS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	----	----	----	----	----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교역물품 반출입 안내
- 대한물품반출 승인신청
- 북한물품반입 승인신청
- 교역 보고
- 반출승인서형 변경승인신청
- 반입승인서형 변경승인신청
- 관련서류 첨부

● 북한물품반입 승인신청

알림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20일]

● 북한물품 반입 승인신청서

반입자	상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무직업 허가번호	<input type="text"/>
위탁자	상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사업자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원산지	코드 <input type="text"/> 원산지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선적항	코드 <input type="text"/> 선적항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송화인	<input type="text"/>	
대금결제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신용장 <input type="radio"/> 추심어음 <input type="radio"/> 송금환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금액	단위 : <input type="text"/> 불(USD) ▼	
결제기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부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까지	
가격조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 가격조건 코드 'CNF' -> 'CFR'】	
승인조건	<input type="text"/>	
신청과	<input type="text"/>	

물품 분류가 1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물품입력 없이 해당의 확인버튼을 클릭 하세요.
신청이 완료된 후 Mypage > 신청내역의 역달리임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물품내역을 입력해서 다시 업로드 해주세요.

● 물품명세

물품개수 ▼ 【* 잘못된 '단위코드'는 자동 삭제됩니다.】

HS번호	종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	----	----	----	----	----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영

My Page

교역물품 반출입

- 교역물품 반출입 안내
- 대한항공물품 반출 승인신청
- 북한항공물품 반입 승인신청
- 교역 보고
- 반출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 반입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
- 관련서류 첨부

● 교역 보고

알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반출입 승인번호 **승인번호조회** > 에 대한 교역보고서

보고인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무역업

신고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고시유

보고개요

● 관련서류 첨부

알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첨부할 신청서와 신청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북한물품 반입 승인신청서
- 북한물품 반출 승인신청서
- 반출입 승인신청서
- 북한물품 반출승인 변경 승인신청서
- 북한물품 반입승인 변경 승인신청서
- 북한물품 반출입승인 변경 승인신청서
- 교역보고서

신청번호선택 > 에 대한 관련 서류첨부

파일 1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2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3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4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5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교역물품 반출입 안내
- 대북한교역물품출 송인신청
- 북한교역물품인 송인신청
- 교역 보고
- 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
- 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
- 관련서류 첨부

● 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

알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20일]

* 반출 승인번호 에 대한 변경신청

반출자

상호

주소

성명

전화

무역업 허가번호

위탁자

상호

주소

성명

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원산지 코드 원산지명

선적항 코드 선적항명

도착항 코드 도착항명

수화인

대금결제 방법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타

금액 단위 :

결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가격조건 [가격조건 코드 'CNF' -> 'CFR']

승인조건

* 품종명세

품종계수 [잘못된 '단위코드'는 자동 삭제됩니다.]

HS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북한주민전속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교역물품 반출입

- 교역물품 반출입 안내
- 남북통일물품반출 승인신청
- 북한통일물품인 승인신청
- 교역 보고
- 반출승인시장 변경승인신청
- 반입승인시장 변경승인신청
- 관련서류 첨부

● 반입승인시장 변경승인신청

열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20일]

• 반입 승인번호 에 대한 변경신청

반입자	성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무역업 허가번호	<input type="text"/>
	상호	<input type="text"/>
위탁자	주소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사업자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원산지 코드 원산지명

선적항 코드 선적항명

송화인

대금결제방법 선용장 추심대음 송금환 기타

금액 단위 :

결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가격조건 [가격조건 코드 'CNF' -> 'CFR']

승인조건

• 물품명세

물품개수 [잘못된 '단위코드'는 자동 삭제됩니다.]

HS부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	----	----	----	----	----

* 교역물품 반입신청시 첨부서류

(#1)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

1. 반입내역

구 분	내 역	비 고
COMMODITY (상 품 명)		
생 산 자		o 북한상사 표시
중 개 인 (승 화 인)		
반 입 자 (신 청 인)		
위 탁 자		
신 청 수 량		
단 가		
신 청 금 액		
반 입 원 가		CIF + 제비용포함
DELIVERY		
반 입 경 로		o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MARKET 형태 (관 매)		
PACKING		
연 락 처 (담 당)		

사후관리은행 :

2. 반입경로 및 대금결제 흐름 (화살표로 표시)

북한
(생산자)

(북측 중개인)

(반입지)

(남측 중개인)

(위탁자국내실수요지)

3. 반입원가 · 국내가격 · 판매가격 비교

구 분	원 / 1kg	비 고
반입원가		o CIF + 제비용 포함
국내가격 (도매가)		
판매가격		o 예상위탁 가격 등 기준
예상수익		
예상수익율		

※ 예상 반입원가 명세 :

4. 국내 가격동향

(단위 : 원/kg)

월별 연도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 자료출처 및 가격기준 명기

5. 판매방법 (계획)

6. 당사의 대북한 물자반출입 실적

7. 신청경위 (동 사안이 신청되기까지의 상세한 상담과정 기술) (이면계속)

8. 신청사유 (교역성립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술)

9. 기타 (북한주민접촉 경험, 제3국 중개상을 통한 상담경험 등 기술)

* 교역물품 반출신청시 첨부서류
(#2)

대북한물품반출관련내역

1. 반출내역

구 분	내 역	비 고
COMMODITY (상 품 명)		
생 산 자		○ 북한상사 표시
중 개 인 (송 화 인)		
반 출 자 (신 청 인)		
위 탁 자		
신 청 수 량		
단 가		
신 청 금 액		
반 출 원 가		CIF+제비용포함
DELIVERY		
반 출 경 로		○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MARKET 형태 (관 매)		
PACKING		
연 락 처 (담 당)		

사후관리은행 :

2. 반입경로 및 대금결제 흐름 (화살표로 표시)

북한
(생산자)

(북측 중개인)

(반입자)

(남측 중개인)

(위탁자국내실수요지)

3. 반입원가 · 국내가격 · 판매가격 비교

구 분	원 / 1kg	비 고
반입원가		o CIF + 제비용 포함
국내가격 (도매가)		
판매가격		o 예상위탁 가격 등 기준
예상수익		
예상수익율		

※ 예상 반입원가 명세 :

4. 국내 가격동향

(단위 : 원/kg)

월별 연도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 자료출처 및 가격기준 명기

5. 판매방법 (계획)

6. 당사의 대북한 물자반출입 실적

7. 신청경위 (동 사안이 신청되기까지의 상세한 상담과정 기술)

8. 신청사유 (교역성립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술)

9. 기타 (북한주민접촉 경험, 제3국 중개상을 통한 상담경험 등 기술)

4. 수송장비 운행

가.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 : 접수일로부터 30일(처리기한)

- (1)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파일작성 또는 스캔후 파일 업로드
 - ① 운행계획서(운행경위 포함)
 - 운행일자, 운송경로, 수송화물내역, 화주 등 기재
 -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내역서
 - ③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 ④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 ⑤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선박운행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처리기한)

- (1) 선박운행승인 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파일작성 또는 스캔후 파일 업로드
 - ① 운행계획서(운행경위 포함)
 - 운행일자, 운송경로, 수송화물내역, 화주 등 기재
 - ② 선박제원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원명부
 - ③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 ④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화물 운송사업) 사본
 - ⑤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대리신청의 경우)
 - ⑥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다.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처리기한)

(1) 수송장비운행 승인사항 변경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2) 관련서류 첨부 : 파일작성 또는 스캔후 파일 업로드

① 변경사항 해당서류

라. 선박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처리기한)

(1) 선박운행 승인사항 변경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2) 관련서류 첨부 : 파일작성 또는 스캔후 파일 업로드

① 변경사항 해당서류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수송장비 운행

- 수송장비운행 안내
-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
- 선박운행 승인신청
-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 선박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 관련서류 첨부
- 항공기운행결과 보고
- 선박운행결과 보고

•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

알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30일]

• 수송장비(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 운행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대표자성명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수송장비종류	<input type="radio"/> 철도차량 <input checked="" type="radio"/> 항공기 <input type="radio"/> 자동차 <input type="radio"/> 기타	
수송장비명칭	<input type="text"/>	
운행장비국적	코드 <input type="text"/> 국적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운행목적	<input type="text"/>	
운행기간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부터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운행예정노선	출발지	출발지명 <input type="text"/>
	경유지	경유지명 <input type="text"/>
	도착지	도착지명 <input type="text"/>
운행계획개요	<input type="text"/>	
신청과	<input type="button" value="지역과"/>	

수송장비 운행

- ▶ 수송장비 운행 안내
- ▶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 ▶ 선박운행 승인신청
- ▶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 ▶ 선박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 ▶ 관련서류 첨부
- ▶ 항공기운행경과 보고
- ▶ 선박운행경과 보고

● 선박운행 승인신청

없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30일]

● 선박운행 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장비종류 선박 여객선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

연번

선박명칭

임할목적

임할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임할예정노선

출발항구 코드 항구명

경유항구 코드 항구명

도착항구 코드 항구명

임할계회개요

임할구분 정기 유정기

회/월

신청과

● 선박운행 계획서

임할장비국호 코드 국경명

임할장비번호 수 대

인원 명

승화인

수화인

출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입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 품종량

품종명 품목 수 개

품목

품종량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수송장비운행 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

- 수송장비운행 안내
-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
- 선박운행 승인신청
-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 선박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 관련서류 첨부
- 항공기운행결과 보고
- 선박운행결과 보고

알림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7일]

수송장비(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운행

승인번호 하 대한 변경신청

신청인

상호(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호 (신분증시번호)

수송장비종류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기타

수송장비명칭

운행장비국적 코드 국적명

운행목적

운행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출발지

운행예정노선

경유지

도착지

운행계획개요

북한주민접속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선박운행 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

알려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수송장비운행 안내
-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
- 선박운행 승인신청
-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 선박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 운전서류 첨부
- 항공기운항결과 보고
- 선박운행결과 보고

[처리기간 : 7일]

● 선박운행 승인신청서 승인번호 에 대한 변경신청

신청인

상호(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장비종류 선박 여객선

금강산관광 여부 금강산관광

선박명칭

운행목적

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출발항구 코드 항구명

경유항구 코드 항구명

도착항구 코드 항구명

운행계획개요

운행구분 정기 부정기

회/월

● 선박운행 계획서

운행장비국적 코드 국적명

운행장비톤수 톤

인원 명

승화인

수하인

출발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입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 활동량

활동량 품목수 개

품목 활동량

수송장비 운행

- 수송장비 운행 안내
-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 선박운행 승인신청
-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 선박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 관련서류 첨부
- 항공기운행결과 보고
- 선박운행결과 보고

● 관련서류 첨부

첨삭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첨부할 신청서와 신청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수송장비 승인신청서 선박운행 승인신청서
 수송장비 승인변경 승인신청서 선박운행결과보고서 항공기운행결과보고서

신청번호선택 > 해당 관련 서류첨부

파일명	문서명	첨부	첨부	찾아보기...
파일 1	문서명			찾아보기...
파일 2	문서명			찾아보기...
파일 3	문서명			찾아보기...
파일 4	문서명			찾아보기...
파일 5	문서명			찾아보기...

● 항공기운행결과 보고

첨삭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항공기운행 신청서 승인번호 > 해당 결과보고

항공기명칭:
 운행목적:
 운행노선:

● 구간별 비행일시 및 항공로

운행구분	구간별 운항일시		항공로	비고
	출발지(일시)	도착지(일시)		
북→남	출발지: <input type="text"/> 년 월 일 시 분	도착지: <input type="text"/> 년 월 일 시 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남→북	출발지: <input type="text"/> 년 월 일 시 분	도착지: <input type="text"/> 년 월 일 시 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탑승자수(승무원, 탑승자 구별작성)

운행구분	승무원		탑승객		소계
	승무원	탑승객	승무원	탑승객	
북→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남→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소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특이사항	<input type="text"/>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상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My Page



- ☐ 수송장비운행 안내
- ☐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
- ☐ 선박운행 승인신청
- ☐ 수송장비운행승인사양 변경승인신청
- ☐ 선박운행승인사양변경승인신청
- ☐ 관련서류 첨부
- ☐ 항공기운행결과 보고
- ☐ 선박운행결과 보고

• 선박운행결과 보고

알림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선박운행 신청서 승인번호 에 대한 결과보고

선박명

운행경로별

입출항 일시

• 수송화물

남한 -> 북한 수송화물 품명 및 물량(톤)

코드 남항명

코드 북항명

수송화물 : 개수

품명

물량톤

북한 -> 남한 수송화물 품명 및 물량(톤)

코드 남항명

코드 북항명

수송화물 : 개수

품명

물량톤

탑승인원 승객 명 승무원 명

반입시 수하인

반출시 승하인

서류민원 신청 관련 서식

1.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방문

[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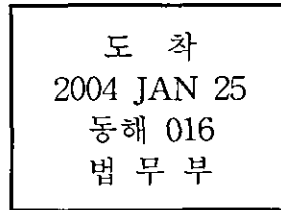
심사확인인(제10조제2항 관련)

(예 시)



(규격 30mm×20mm)

(예 시)



(규격 30mm×20mm)

[별지 제2호서식]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인사 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사 진 3.5cm×4.5cm		
	생년월일	출생지		신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소속	직위	(전화:)				
② 동반 자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사 진 2.5cm×3cm	사 진 2.5cm×3cm		
				cm				
				cm				
③방문 대상자 인사 사항	성명	나이	관계	거주지				
④방문목적								
⑤방문경위 (초청장 방문 알선 및 중개 포함)								
⑥방문예정시 지역 및 일정								
⑦방문귀환 예정 경향								
⑧방문경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남한지역의 법질서와 안내에 따를 것이며,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하단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p>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m²)

- 첨부서류: 1. 방문증명서용 사진(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포함)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출 입 신 고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 □속은 적지 마십시오. •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성 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주민등록번호후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성별 남 · 여	
방문증명서번호	직업 · 직장명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거주지 주소 · 전화번호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방문지 주소 · 전화번호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방문목적	출발지(탑승편명) ()		
방문예정기간	서 명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공용란	심사인		

80mm×118mm
인쇄용지(OCR급)105g/m²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 운행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20일
------	-----

① 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⑤ 송화인
(인)	⑥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③ 원산지	금 액
④ 선적항	결 제 기 간
⑧ HS부호	⑦ 가격조건
⑨ 품목 및 규격	⑩ 단위 및 수량
	⑪ 단 가
	⑫ 금 액
⑬ 승 인 조 건	
⑭ 승인유효기간	
⑮ 승 인 번 호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첨부서류 : 뒷면</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p>	

32313-05311민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 첨부서류 :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2.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3.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①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 ④ 북한주민 접촉승인서 사본
 - ⑤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소정양식)

대북한 반출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20일
------	-----

① 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⑥ 수취인		
(인)			⑦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③ 원산지			금 액		
④ 선적항			결 제 기 간		
⑤ 도착항			⑧ 가격조건		
⑨ HS부호	⑩ 품명 및 규격		⑪ 단위 및 수량	⑫ 단 가	⑬ 금 액
⑭ 승 인 조 건 ⑮ 승인유효기간 ⑯ 승 인 번 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div style="text-align: center;">. . .</div>					
통 일 부 장 관					

32313-05411번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 첨부서류 : 1.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
2.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3. 반출대행계약서 (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 (해당물품에 한함)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①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 ④북한주민 접촉승인서 사본
 - ⑤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소정양식)

- 첨부서류 : 1. 반출입승인신청서
2. 반출·반입계약서
(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를 첨부)
3.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①북한물품반출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 ④북한주민 접촉승인서 사본
 - ⑤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소정양식)

- 첨부서류 :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재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재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 첨부서류
1.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2.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3. 선박제원 1부
 4. 선박국적증서 1부
 5.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화물 운송사업)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보험증서(P&I증명서) 1부
 8. 선원명부 1부
 9. 통신체제도 1부
 10. 항로도 1부
 11. 선박검사증서(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2.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및 수산물을 수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13.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남북간 부정기 4회 이상 선박운행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정기운행신청에 한한다) 1부
 1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선박정기운행승인서

상 호 (명 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명칭			
운 행 노 선			
운 행 목 적			
운 행 승 인 유효 기 간			
<p>* 승인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 회 이상 운행 하지 않을 경우 정기운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을 위해 용선하는 외국적선은 남북간 운행사업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3. 남북간 및 제3국과 연계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선박운행 후 그 결과를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기타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p>			

210mm×297mm

선박부정기 운행승인서

상 호 (명 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명칭			
운 행 노 선			
운 행 목 적			
운 행 승 인 유 효 기 간			
<p>* 승인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인기간 내에 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승인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송장비운행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3조의 서류를 허위기재한 경우 승인을 취소합니다. 4. 선박운행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기타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p>			

<부록 2>

■ 남북교역 관련 법규	157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57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65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85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188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90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198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208
8.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211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213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227
11.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234
12. 남북협력기금법	239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243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249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251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79
17.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297
18. 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	304

- ▣ 남북교역 관련 합의서 305
 - 1.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305
 -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312
 - 3. 남북해운 합의서 320
 - 4.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327
 - 5.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332
 - 6.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335
 - 7.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340
 - 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345

■ 남북교역 관련 법규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2. 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 1994. 12. 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 1996. 12. 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 4 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 6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협의회의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 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

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
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
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
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
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
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생략〉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 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8호
(교통세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병역법시행령)
1996. 5. 31 대통령령 제15006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 12. 15 대통령령 제15539호
(우편법시행령)
1998. 10. 23 대통령령 제15920호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5호
2001. 10. 31 대통령령 제1739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장소)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인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준용규정 등)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 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단수방문증명서”라 한다)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② 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③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제①의 수시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권)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는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신고의무)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①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방문안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증명서의유효기간등) ①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3년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 북한방문증명서중 단수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후 7일 이내에,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남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남한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

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북한방문신고서
-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 2. 신원진술서
-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19조의 2(접촉승인유효기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승인을 함에 있어서 접촉목적에 따라 3년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 3(접촉결과보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 방문결과보고서"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의 2(심사확인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

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 역

제25조 <삭 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변경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호(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 1. 한국은행
- 2. 한국수출입은행
-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운행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여야 한다.

-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 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업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역무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 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

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세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의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생략〉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3호 2002.3.4

제 1 조(목 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북한방문신고)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방문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 7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북한방문신고서에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또는 초청장 원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북한방문안내교육) ①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안내교육을 받고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있는 자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목적·방문기간 및 최근 북한방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재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2매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방문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 7 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8 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신고서)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 9 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접촉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

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신고서 등) ①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역보고서에 물품의 반·출입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 13 통일원고시 제90-1호
개정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1998-4호
개정 1999. 5. 28 통일부고시 제99-1호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출입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 3 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현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3.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4.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5.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제 4 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 5 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물품
3. 전락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제 6 조(물품의 보관)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 7 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칙 및 별지 생략〉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개정 1998. 4. 13 관세청고시 제98-13호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 등
 개정에 관한 고시)
 개정 1998. 10. 26 관세청고시 제98-59호
 개정 1999. 5. 27 관세청고시 제99-22호
 개정 2002. 3. 28 관세청고시 제02-16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52조와 관세법 제96조 제1호·제3호, 제24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한간 왕래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제 3 조(휴대품신고서 제출) ①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

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제 4 조(신고대상물품) ①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입여부를 휴대품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1인당 휴대품인정범위(연도별 4회, 1회당 전체취득가격 총액 US \$300상당액)를 초과하는 물품
3.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특정물품의 반입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5.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테이프·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7.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8.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독성 물질류
9. 앵속·아편·코카인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10. 동물(고기·가죽·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1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5. 남북한왕래자유제품통관에관한고시

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 :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올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12.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②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지급수단 등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휴대품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반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검사방법) ①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휴대품 통관

제 7 조(여행자유제품 인정범위) ①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 목적, 체재기간,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전체취득가격 총액이 US \$300 상당액 이내로서 여행자유제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되, 연도별 4회까지 허용한다. 다만,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

에서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물품의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에 제기된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이는 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된다.

1. 주류 : 1병(1리터 이하)
2. 담배 : 1보루(엽결련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램)
3. 향수 : 2온스
4. 농산물(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 참 기 림 5kg
 - 참 개 5kg
 - 꿀 5kg
 - 고사리, 더덕 5kg
 - 잣 1kg
 - 기 타 5kg(품목당)
5. 한약재(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이내에 한함)
 - 인 삼 300g
 - 녹 용 150g
 - 기 타 3kg(품목당)

③(삭제)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반출입 규제물품)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반입금지물품 (별표1)은 반출·반입을 불허한다.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②다음 각호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이 허용된다고 고시한 반출·반입 제한물품(별표2)
2.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 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 ①세관공무원은 제7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반입이 규제되어 반출·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휴대품 보관증(별지 제2호 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과 세

제10조(반출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 인정범위 이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7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 및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제 5 장 승무원의 휴대품 인정범위 등

제11조(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와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2.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27)

1. 이 고시는 1999. 7.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반출·반입 금지물품

가.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
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5)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나. 반출을 불허하는 물품

- 1)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별표 2]

반출·반입 제한물품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2) 검역대상물품
- 3) 전락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
하지 아니한 물품

{별지 제1호 서식}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신고서” (게재생략)

{별지 제2호 서식}

“휴대품보관증” (게재생략)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제정 1990. 9. 25 통일부고시 제90-2호
- 개정 1991. 5. 6 통일부고시 제91-2호
-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4호
- 1995. 1. 3 통일부고시 제95-1호
- 1996. 3. 5 통일부고시 제96-1호
- 1997. 4. 1 통일부고시 제97-1호
-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 1998. 6. 19 통일부고시 제98-2호
- 1999. 8. 16 통일부고시 제99-2호
- 2000. 9. 28 통일부고시 제2000-1호
- 2001. 12. 31 통일부고시 제2001-6호
- 2002. 10. 24 통일부고시 제2002-2호
- 2003. 12. 22 통일부고시 제2003-5호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제 3 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 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비디오물을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품목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5. 영 제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다만,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제 4 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 5 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 6 조(반출·반입승인 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부 칙(2003·12·22)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반입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102-10-1000	소(종우/젖소)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20	0305-30-1000	건조어류퍼렛트(명태포)
21	0305-59-3000	건명태(복어)
22	0306-14-3000	꽃게(냉동)에 한함. 7.1-8.30 반입제한
23	0306-14-9000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탈게 7cm이하 반입제한
24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엽장·엽수장)
25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에 한함. 7.1-8.30 반입제한
26	0306-24-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탈게 7cm이하 반입제한
27	0307-29-1000	가리비(냉동)
28	0307-49-1020	오징어(냉동)
29	0307-59-1020	낙지(냉동)
30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31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32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3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4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5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6	0402-91-1000	무당연유
37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38	0402-99-1000	가당연유
39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40	0403-90-1000	버터밀크
41	0404-10-1010	유장분말
42	0404-10-1090	유장(유장분말 이외)
43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44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45	0409-00-0000	천연꿀
46	0410-00-3000	로얄제리
47	0701-10-0000	감자(종자용)
48	0507-90-1110	녹용전지
49	0507-90-1190	녹용기타
50	0507-90-1200	녹각
51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52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53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냉장)
54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냉장)
55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56	0710-80-2000	마늘(냉동)
57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8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59	0712-20-0000	양파(건조)
60	0811-90-1000	냉동밥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61	0811-90-2000	냉동대추
62	0811-90-3000	냉동잣
63	0811-90-9090	냉동호두
64	0712-90-1000	마늘(건조)
65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66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67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68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69	0714-20-1000	고구마(신선)
70	0714-20-2000	고구마(건조)
71	0714-20-3000	고구마(냉장)
72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73	0714-90-9090	서류(기타)
74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75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76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77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78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79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80	0810-90-3000	대추(신선)
81	0813-40-2000	대추(건조)
82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83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84	0910-10-0000	생강
85	1003-00-9010	겉보리
86	1003-00-9020	쌀보리
87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88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89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90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91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92	1006-10-0000	벼
93	1006-20-1000	메현미
94	1006-20-2000	찰현미
95	1006-30-1000	맷쌀
96	1006-30-2000	찰쌀
97	1006-40-0000	쇄미
98	1007-00-1000	수수(종자용)
99	1008-10-0000	메밀
100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101	1102-30-0000	쌀가루
102	1102-90-1000	보리가루
103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104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105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106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107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108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09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10	1103-20-1000	밀(펠리트)
111	1103-20-2000	쌀(펠리트)
112	1103-20-3000	보리(펠리트)
113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14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5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6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17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18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9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20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21	1104-29-1000	올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22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23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24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25	1108-11-0000	밀 전분
126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27	1108-13-0000	감자 전분
128	1108-14-0000	매니옥 전분
129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30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31	1108-20-0000	이눌린
132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33	1201-00-9000	대두(기타)
134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35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6	1207-40-0000	참깨
137	1207-99-1000	들깨
138	1211-20-1100	수삼
139	1211-20-1210	백삼(본삼)
140	1211-20-1220	백삼(미삼)
141	1211-20-1240	백삼(잡삼)
142	1211-20-1310	홍삼(본삼)
143	1211-20-1320	홍삼(미삼)
144	1211-20-1330	홍삼(잡삼)
145	1211-20-2110	인삼분(백삼)
146	1211-20-2210	홍삼분
147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8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9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50	1211-20-9200	인삼종자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51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52	1213-00-0000	곡물의 낱과 껍질(벼짚에 한함)
153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54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55	1302-19-1110	인삼정(백삼)
156	1302-19-1210	홍삼엑스
157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8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59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60	1702-11-1000	유당
161	1702-19-1000	기타 유당
162	1702-90-1000	인조꿀
163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 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4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5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6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7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8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9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70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71	1902-19-2000	당면
172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73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74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75	2009-31-9000	감귤류 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라임 이외)
176	2009-39-9000	감귤류 주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77	2103-90-1030	고추장
178	2103-90-9030	혼합조미료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79	2103-90-9040	매주
180	2103-90-9090	혼합조미,조제품 기타
181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82	2106-90-3021	홍삼차
183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84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85	3301-90-4520	추출한 울레오레진(홍삼의 것)
186	3505-10-3000	배소전분
187	3505-10-4000	프리젠틸라티나이즈드 전분
188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89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90	3505-20-1000	전분 글루
191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92	3505-20-9000	기타 글루
193	5004-00-0000	견사
194	9613-1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
195	9613-2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1994. 6. 20 통일부고시 제94-1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개정 2001. 4. 18 통일부고시 제2001-2호

제 1 조(목 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또는 선박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 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 및 승무원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제 3 조(선박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선박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2. 운행계획서 1부
 3. 선박제원 1부
 4. 선박국적증서 1부
 5.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화물 운송사업)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보험증서(P&I증명서) 1부
 8. 선원명부 1부
 9. 통신체계도 1부
 10. 항로도 1부
 11. 선박검사증서(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2.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및 수산물물을 수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13.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남북간 부정기 4회 이상 선박운행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정기운행신청에 한한다) 1부
 1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 제 4 조(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3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조의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 5 조(변경승인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제2조 내지 제3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 중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추가자료 요구)**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2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 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이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은 별지 제4호 서식, 선박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2001. 12. 31 통일부고시 제 2001-5호

제 1 조(목 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선박운행의 안전을 위한 선박운행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기운행”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2. “정기운행”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부정기운행 승인기준) 통일부장관은 부정기운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또는 부정기운행 실적이 다음 각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는 선박운행승인신청인과 북한측의 책임 있는 기관간에 체결되어야 할 것
2. 급박한 운항일정 등의 사유로 북한측으로부터 계약서를 갈음하는 입항허가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입항허가서에 수송장비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3. 선박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선박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8.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 4 조(정기운행 승인기준) 통일부장관은 정기운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또는 부정기운행 실적이 다음 각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남북한간 정기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는 선박운행승인신청인과 북한측의 책임 있는 기관간에 체결되어야 할 것
2. 정기운행에 투입될 선박은 정기운행에 적합한 규모·구조·장비 등을 갖출 것
3. 선박운행승인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정기적으로 4회 이상 선박을 운행한 자로서, 부정기운행 기간 중에 경고·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 5 조(대리신청 승인기준) 통일부장관은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
3.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개정 1996. 6. 19 (관세청고시 제96- 41호)
개정 2001. 1. 12 (관세청고시 제2001-1호)
개정 2001. 5. 29 (관세청고시 제2001-24호)
개정 2003. 9. 25 (관세청고시 제2003-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관세법 및 남북사이 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에 의거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교역 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 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 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대외 무역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 요

전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 사물품은 제외한다.

제 2 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 4 조(물품의 장치)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반입절차) ①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1조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7 조(내국세 등) ①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물품가격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 및 환급절차) ①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물품으로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비조건 등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고무인을 반출입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준용)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13조(원산지 확인)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4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용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하인과 수하인 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15조(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①관세청장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

인을 요청할 수 있다.

-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관세청장은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원산지 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 관세청장이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간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①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한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간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통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발급기관장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을 요구받은 발급기관장은 15일 이내에 당해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기간내에 확인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고예정일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보고일자는 당초 보고시한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관세청장은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 관계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인정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통보기가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 통보예정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18조(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여행자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반입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제 4 장 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세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 및 서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중 1부를 통일부장관을 경유하여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①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 원본 또는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기타 발급기관장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원산지확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을 날인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2부(제출용 1부, 신청인보관용 1부)를 발급하며, 각각의 증명서 표면에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기 발급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와 재발급표시를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1. 발급번호는 기발급된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재발급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부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발급일자는 기발급한 발급일자와 동일하게 표기한다(예시 : 원래의 발급번호가 123인 경우의 1차 재발급시의 발급번호 123-1)
2. 재발급표시와 재발급일자는 서식 제5란(공적사용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예시 : 재발급 2003.10.10)

⑦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재발급은 최초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⑧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타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장이외의 타 발급기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발급기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원산지확인기준

제22조(원산지확인기준) ①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 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 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
-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경우
-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경우
-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
-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경우
-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경우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경우
-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제23조(원산지결정의 특례)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이 남한 또는 북한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
-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 번호로 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원산지확인 세부기준 운영) 이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확인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직접운송원칙)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세관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6조(조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범칙 등의 조사를 의뢰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 한 때
2.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27조(반출입 통계) ①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

9.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는 바에 의한다.

제28조(보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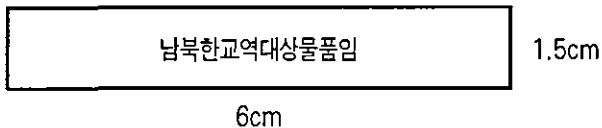
1.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관세범칙 등의 조사의뢰(즉시)
2.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29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3-31호, 2003. 9.25)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시 제11조 관련)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예관한규정

제정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2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개정 1999. 5. 28 통일부고시 제99-1호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예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예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채
 -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 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4 조(사업실적 인정범위) 영 제30조제2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 5 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방식, 사업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투자규모·투자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3. 의향서 사본 1부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구비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매 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수시방북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경제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

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 1부(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을 포함)
3. 제3조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 9 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 다. 생산 및 판매계획
 -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마. 추진일정 계획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 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마. 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조달 방법
 - 바. 당사자의 임무
 -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카. 효력발생 조건
-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 불이행의 해결 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 나.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12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제1항제6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이내)
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총 투자액이 미화 300만 불 이하일 경우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3.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일 경우

〈부칙 및 별표 생략〉

11.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3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98-4호

제 1 조(목 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 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 3 조(사무소의 설치 승인) ①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무소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 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 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은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4 조(승인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 5 조(승인 처리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 제>

제 7 조(사무소의 폐지)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무소 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사무소 설치 보고 등) ①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 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 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 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

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재원의 북한방문) ① 통일부장관은 사무소 설치 승인 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6월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주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의거 매 귀환 후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시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주재원은 승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방북 만료기간 30일 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시방북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11.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부칙 및 별지 생략〉

•

12. 남북협력기금법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3. 12. 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 1996. 12. 12 법률 제5170호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
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1999. 5. 24 법률 제5982호(정부조직법)
- 1999. 12. 31 법률 제6075호(국채법)

제 1 조(목 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4 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 5 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제 <'93.12.31>

제 7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

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용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용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기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 '93.12.31〉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생략〉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제정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7호
-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자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채권의 발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회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 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 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 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 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

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

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생략〉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27 총 리 령 제384호
개정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2003. 2. 6 통일부령 제17호

제 1 조(목 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중 다음 각목의 용자
 -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이상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이상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억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비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 미만의 지원
- 2의2.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중 다음 각목의 용자
 -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미만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미만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미만의 자금지원, 5천만원 미만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생략〉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17 통일원고시 제1991-1호
 개정 1998. 5.12 통일부고시 제1998-1호
 1998.12.31 통일부고시 제1998-4호
 1999.10.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2003. 2. 6 통일부고시 제2003-1호
 2004. 1.28 통일부고시 제2004-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 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위탁수수료)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 제 8 조(채무의 조정)**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1. 회수비용이 회수에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법적 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 4 장 무상지원

제 1 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 9 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 화 · 학 술 · 체 육 협 력 지 원 자 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이 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지원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24조(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 제2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5 장 손실보조

제 1 절 손실보조의 대상

-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반출한 물품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

다.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마.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
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
능 또는 회수지연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
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6조의 1(담보하는 위험) 제26조의 손실보조 대상중 손실보조금 지
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
한 손실

-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 3. 제26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작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2호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 이내로 한다.

제 2 절 손실보조 약정체결

제29조(약정체결한도)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손실보조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동 범위내에서 약정을 체결토록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업별 남북 거래실적 및 신용도, 지원 형평성, 사고 빈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약정체결한도(이하 “약정한도”라 한다.)를 설정하거나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별 약정한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 5억원
-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 20억원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약정한도는 잔액기준으로 관리한다.

제30조(약정대상거래) ①약정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26조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인 거래로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약정 신청자 등) ①기금에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을 것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가.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할 것

나.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구비할 것

②약정 신청거래의 북한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

2. 기타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약정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기금

수탁관리자에게 손실보조와 관련한 약정상담 및 약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약정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약정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⑤기금수탁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다.

제32조의 1(약정체결시점 및 약정체결기간) 약정체결시점 및 약정체결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약정승인권자가 거래의 특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 2(약정가액과 약정금액) ①손실보조약정가액(이하 “약정가액”이라 한다.)은 [별표3]의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승인권자가 거래의 특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손실보조약정금액(이하 “약정금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약정가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의 3 (손실보조비율) 제32조의 2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조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손실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 4(약정체결 방법) ①약정체결은 개별 약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손실보조의 효율적인 위험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별, 품목별로 포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약정은 기금과 약정신청자가 손실보조 대상거래를 정하여 해당거래 전부를 의무적으로 약정체결하고 기금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이를 승인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제33조(손실보조수수료)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 체결시 약정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손실보조수수료를 수납한다.

②손실보조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조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 후, 약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약정의 효력) ①약정의 효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 수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약정의 내용변경) ①피약정자가 약정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 변경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약정변경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입금대금, 선적금액 포함)
2. 결제조건(결제통화, 결제기일 포함)
3. 북한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4. 기타 중요한 내용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통보받는 즉시 약정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손실보조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37조(손실보조수수료의 환급) ①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손실보조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손실보조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손실보조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보조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 3 절 손실보조금 지급

제38조(사고발생통지 등) ①피약정자는 약정기간중 제26조 내지 제26조의 1의 [별표1]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월 경과후에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손실보조금 지급절차)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급 등의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침에 따라 피약정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9조의 1(사고조사의 실시)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시 피약정자 및 북한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사고발생의 원인, 사고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②사고조사는 서류조사, 현지 출장조사,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 2(손실액의 계산) 손실액의 계산은 발생한 손실액에서 사고발생

후 피약정자가 손실경감조치, 전매, 기타 합리적인 조치 등으로 회수 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또는 이로 인한 손실경감액 등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며, 기타 구체적인 손실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의 3(지급심사보고서)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발생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급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및 손실액계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사고발생 경위 및 내용
2. 피약정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거래관계 심사 : 약관의 준수 여부(법령위반 포함), 거래계약서의 이행여부, 합리적인 손실경감 조치 시행여부, 계약당사자간의 거래관계(거래의 진위 포함) 등
3. 손실액 계산내용
4. 지급판정에 관한 제안 및 필요조치
5. 기타 지급판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손실보조금 지급) ①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에 약정에서 정한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이내로 하며 약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손실보조금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침 결정 통보후, 1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사유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거나 사고확정에 특별히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면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금은 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42조(약정해지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
2. 피약정자의 과실, 약관위반, 고지의무 불이행 등
3. 피약정자의 약정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제43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손실보조금의 가지급) ①아래 각호 1의 사유로 약정에서 정한 손실보조금 지급기한까지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의 일부를 가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은 약정금액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손실보조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제 4 절 사후관리

제45조(손실방지·경감의무) ①피약정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약정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의 방지·경감 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피약정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회수의무) ①기금으로부터 손실보조금을 지급받은 피약정자는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가 제1항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수된 금액 한도내에서 기금이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금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피약정자로 하여금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

제47조(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9조(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지연배상금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매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기 타

제51조(이의 신청) ①통일부장관이 이 규정 제5장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고거래의 종결)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거래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 또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거래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53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54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5조 (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6조 (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과 관련한 상담 및 대출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자금대출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 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57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대출금 상환) ①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일로부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59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3조의 대출의 대상, 제54조의 대출비율, 제55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 등

제60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제58조 내지 제59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제61조(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

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채무보증

제62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63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회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64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65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66조(손실보전 신청등) ①금융기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67조(보전이자율등)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금융기관융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8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간만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9조(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금지원 신청서 1부를, 제6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70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71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매각할 수 있다.

제72조(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3조(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제74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

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6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0 장 보 칙

제77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8조(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

게 송부하여야한다.

제79조(대손충당금) ①이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당해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당해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 금액,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자산건전성 재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80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및 별지 생략〉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1999.10.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개정 2000.11.21 통일부고시 제2000-2호
2001.12.31 통일부고시 제2001-3호
2003. 2. 6 통일부고시 제2003-2호
2004. 1.28 통일부고시 제2004-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13.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14. “재대출”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 대출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대출금액의 증액없이 대출기한을 새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5. “사회간접자본”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말한다.

제3조(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제4조(대출표시통화) ①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5조(회수통화) 대출원금 및 이자는 원화로 받는다.

제6조(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대출이자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린다.

③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연배상금을 받으며, 지연배상금률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대출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마다 받는다.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는 기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매 6월마다 후취
2. 반출·반입자금대출 : 매 1월마다 후취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의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설비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6월마다 후취

제7조(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지원방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8조(채권보전) ①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예외취급) ①이 지침에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자금 및 반출·반입자금대출의 대출금액, 대출조건, 채권보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취급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액 5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을 1%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2 절 지원대상

제10조(대출대상)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업무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3조에서 정한 자
2. 반출·반입자금대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

제11조(우선지원대상) 제10조에서 규정한 대출대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4.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유희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6.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7. 농업 및 어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12조(대출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법인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나. 대외무역법

다. 관세법

라. 외국환거래법

마. 기타 전 각목에서 정하지 않은 대외거래·외국환관련 법령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5. 기금수탁관리자의 여신억제기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물적담보 등 양호한 담보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나.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6.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승인을 얻어 예외취급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경우

나.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7. 본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제 3 절 신용대출

제13조(신용대출 대상) ①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별표 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 시행기간이 5년 이상이고 최근 4년간 연평균교역실적(반출입실적 합계)이 미화 2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교역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지원, 경제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실적은 제외하며, 당해연도의 교역실적은 연간규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14조(신용대출한도 관리) ①신용대출한도는 [별표 3]과 같이 차주별로 산정한다.

②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신규승인액, 기승인액중 미집행잔액 및 기대출잔액의 합계액에서 담보대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별표 3]에서 정한 차주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차주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순자산이 큰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제 2 장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15조(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1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은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 3 장 반출·반입자금대출

제 1 절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

제18조(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 : 반출목적물의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1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2.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 : 반입금액(반입선급금액과 운임·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1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②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 또는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입선급금액을 산정한다.

1. 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출 :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
2.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출 : 어선과 어구자재 반출비용

제19조(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종 물품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2.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제 2 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 설비 반출자금대출

제21조(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1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설비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②제1항에서 규정된 소요자금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
2. 설비의 구입 · 포장 · 운송 및 현지조립 · 설치비
3. 유휴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검사 및 해체 · 보수비

제22조(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토록 한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원칙.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 3 절 실적한도대출

제24조(실적한도대출 대상) 실적한도대출은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25조(대출금액) ①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교역시행기간	남북교역실적 인정비율
최근 5년이내에서 3년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교역실적의 100분의 70.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의 80
최근 5년이내에서 3년미만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교역실적의 100분의 50.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의 60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제27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다.

제26조(교역실적의 인정범위) ①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는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대출승인신청 직전년도 of 연간 반출입실적 합계
2. 대출신청일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지원, 경제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실적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반출입실적은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정시점 이전단계의 반출입계약서 또는 관련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입실적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산입된 금액은 향후 반출입실적 산정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반출 : 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입금된 때, 반출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환어음이 추심 전 매입되거나 또는 추심 의뢰된 때
2. 반입 : 반입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지급 지시된 때,

반입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 지시수권서 또는 인수확약서가 발송된 때

제27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집행방법 및 상환방법) ①대출금은 채권보전 후 일시에 집행한다.
②대출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 상환토록 할 수 있다.
③재대출 경우에는 만기일에 상환되는 금액과 신규 대출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중복수혜 금지) 실적한도대출의 수혜기업은 남북교역실적 산정에 포함된 관련 계약서 등에 터잡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무역금융 등을 중복 수혜받을 수 없다.

제 4 장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

제 1 절 단기 반출·반입거래에 대한 특례

제30조(적용요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대출신청거래에 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 결산 3기 이상일 것

나. 최근 5년 이내에서 2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고, 연평균 교역 규모가 미화 5만달러 이상일 것

다.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기업신용등급 :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재무등급이 6등급 이상

제31조(신용대출한도)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잔액은 기금의 이익적립금 범위내로 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연간 취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표의 차주별 신용한도 범위내에서 30억원 이내로 한다.

재무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1등급~2등급	순자산의 60%
3등급~4등급	순자산의 40%
5등급~6등급	순자산의 20%

③제2항의 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 신용대출을 차감하여 관리한다.

제32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특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채권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관리규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말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할 때 재무등급을 기업신용등급으로 간주 한다.

제 2 절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특례

제33조(적용요건) ①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는 북한소재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 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 나. 1년 이상의 대북사업 경험을 구비할 것(원부자재 반출거래에만 적용)
 - 다.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
 - 라.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가 연대보증할 것
3. 경제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더하여 사업성이 양호해야 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 가.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대비 3배 범위내일 것
 - 나. 자기자본회전율이 동종업계 평균대비 1/2 이상일 것
4.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 : 당해 기업이 투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북한당국 또는 북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소유를 인정받고 [별표6] 에서 규정하는 취득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함.

②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해당자산이 북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병 또는 합작방식의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4조(북한소재자산의 신용대출 인정범위) ①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북한소재자산의 신용대출 인정비율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기금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율에 10%포인트까지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인정금액은 차주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기업신용등급 P5 이상 : 차주 순자산의 70%
2. 기업신용등급 P6 : 차주 순자산의 60%
3. 기업신용등급 SM : 차주 순자산의 50%

③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 신용대출 인정금액은 차주별 신용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제35조(대출취급방법)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자금별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범위내에서 취급하되, 북한소재자산에 대하여는 [별표 6]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침담보로 취득하고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 인정금액을 제외한 잔여 대출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대출이자율 결정시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신용대출취급 부분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에 준하는 가산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반출 실적한도대출을 신청하면서 북한소재 원부자재를 침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 인정비율을 전년도 원부자재 반출실적의 1/4 범위내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북한소재 원부자재를 포함한 국내외 원부자재에 대하여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할 것
2.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출기간을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설정할 것

제36조(북한소재자산의 취득방법 및 사후관리) 기금수탁관리자의 북한소재자산의 취득방법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절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대출에 대한 특례

제37조(적용요건)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SM이상일 것
3. 신용보증서 : 남북협력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80% 이상일 것

제38조(신용취급한도) 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잔액은 기업당 5천만원 미만으로 하되, 당해 기업 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등급이 SM인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잔액합계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급된 신용대출부분은 차주별 신용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제 5 장 사후관리 등

제39조(기타 채권보전조치) ①대출을 취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이 양호한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

②채권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으로 제작 또는 구매되는 반출 또는 반입목적물, 해당 반출입계약서에서 정한 차주의 권리 또는 수익금, 채권 등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실적인

도대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①실적한도대출 지원거래에 대하여는 대출집행후 매 6개월마다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남북교역실적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출한도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침 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 회수, 대출한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①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받도록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의 허위정도를 감안하여 기금대출 수혜자격 제한, 신용불량 정보 대상자 통보, 기한의 이익상실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기금관계 법규에 따라 신용취급이 이루어졌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출관련담당자를 부채하지 아니한다.

제42조(면책) 이 지침 및 관계법규에 부합하게 취급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관련 담당자를 부채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4. 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승인시 지원결정내용에 따른다.

②이 지침의 “제4장 제2절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특례”는 이 지침의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시행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탁가공용설비 반출 자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정 2003.9.29 통일부고시 제2003-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범시행령 제 50조 제2항의 규정 및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이하“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양식, 인장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북한에 즉시 통보한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①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 ②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③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 ④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⑤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원산지 판정기준) ①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제품
-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

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원산지 확인절차) ①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북한에 요청할 때는 사전에, 북한측에서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 대하여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대하여 현지방문에 따른 제반조치 및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요청 관련 처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산지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1.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8조(원산지 확인기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한은 관세청으로 하며, 북한은 민경련으로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제9조(원산지증명서 면제) 남북한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범위는 남북원산지합의서 제7조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면제에 관해 남북한간 합의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범위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0조(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통일부장관은 북한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3. 남북한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남북한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②실무협의회는 3~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실무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회 대표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원산지제도 운영관련 세부사항)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까지 세관에 반입신고된 물량에 한하여 북한의 민경련 이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로서 진의여부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17.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2.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3.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6. 운송수단 및 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 수 및 종류 Numbers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 고(Other information)		상기 물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임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발급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발급기관 서명 Authorized signature	
확인 인 Stamp ○			

※ 이 양식은 남북교역물품용임.

210mm×297mm

* 북측이 제시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원산지증명서

번호 _____

날자 주체 _____ 년 월 일

(2004)

판 매 자 _____

구 매 자 _____

품 명 _____

수 량 / 중 량 _____

포 장 / 표 식 _____

제 품 생 산 자 _____

제 품 생 산 장 소 _____

수 송 수 단 _____

상기 제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및 가공됨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발급장소 :

18. 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

제정 2003.3.28(통일부고시 2003-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개항)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은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개항으로 한다.

제3조(기타 출입장소) 영 제2조제1항제4호의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경의선 연결 분계역 및 터미널
2. 동해선 연결 분계역 및 터미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북교역 관련 합의서

1.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0. 12. 16 채택

2003. 8. 20 발효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 3 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 4 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 5 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 6 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 7 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8 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 9 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1 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 12 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 13 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 14 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 17 조 조 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8 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 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 19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 보장	사업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 10. 12 채택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 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중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 2 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 4 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 8 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0 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 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11 조 위원회의 재정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 12 조 통 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 14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10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남 측〉	〈북 측〉
구성	조직
이하	이 아래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본신업무에 맞는 범위
보좌인원	보장성원
중재인	재결원
기피신청	거부신청
이의신청	반대의견 제기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판정	재결
본다	인정한다
서면	문서교환 방식
서명	수표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열거	지적
교부	제시
분쟁해결절차	사건심리
서류	문건
문서보관소	문서보관장소
연락관	연락대표
수령	문서접수날자
문본	문건
원본	원문

3. 남북해운 합의서

2002. 12. 28 채택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정 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

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합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정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 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 4 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3. 남북해운 합의서

-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정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 5 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구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 6 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 7 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 8 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9 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남북해운 합의서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 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 10 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1 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 12 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 13 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 14 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 15 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2년 12월 28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통 일 부 장 관 정 세 현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북 남 상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내 각 책 임 참 사 김 령 성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해상운송
해상운송회사
입차
어획물
소지
해사당국
통관
해역
항행경보
하역
용역
해양사고
전복
보호조치
방제
구조·구난
무사귀환
대리점
관행
준용
교류·협력

〈북 측〉

해상수송
해상운수기관
용선
물고기
소유
해운당국
통과
수역
항해경보
상하선
봉사
해상재난
침몰
구원조치
제거
구조
안전송환
대리인
관례
적용
협력

4.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3. 7. 31 채택

2003. 9. 29 발효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 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 3 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

4.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 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 4 조 원산지 판정기준

-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 5 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4.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 6 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 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7 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 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 다. 우편물
 - 라.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
2.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절차 유지에 필요한 사항

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

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

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9 조 해석 및 적용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10 조 수정·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7월 31일 각각 2부 작성하였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5.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2002. 12. 8 채택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정 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 2 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

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 5 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방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제 6 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방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 7 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8 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걸쳐 효력을 가진다.

제 9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6.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2002. 12. 8 채택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정 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 2 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 3 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세관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 4 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 나. 적재량 또는 정원
 -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 6 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 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

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7 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 8 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 9 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 10 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 11 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12 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7.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2002. 12. 8 채택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정 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 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 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 2 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 3 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 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 4 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제 5 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 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7.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제 7 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 할 수 있다.

제 8 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 9 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 10 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11 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2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서명

발효

문본

효력을 발생한다

말한다

〈북 측〉

수표

효력발생

문건

효력을 가진다

의미한다.

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004. 1. 29 채택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라고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제 2 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 3 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제 4 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통행차량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 6 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체 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체

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제 9 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제 10 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 에 대하여

-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 11 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12 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측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 13 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14 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15 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 16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29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1월 29일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통일부장관 정 세 현

북 남 상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책임참사 김 령 성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남 측〉	〈북 측〉
통행차량등	수송수단
교통수단	운수수단
출입심사	출입검사
출입장소	출입지점
훼손	오손
상황	정황
주거	주택
벌칙금	벌금
부과하거나	물리거나
상호	호상
구성	조직
발생하는	제기되는
문본	문건

<부록 3>

■ 남북교역의 약사

일 자	주 요 내 용
'88. 7. 7	○ '7·7선언' 발표
'88.11.14	○ 최초 반입승인(대우, 도자기 519점, 104천불)
'89. 1.26	○ 최초 반입통관(효성물산, 전기동 200톤, 660천불)
'89. 6.12	○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
'89. 2. 4	○ 최초 반출승인(현대상사, 잠바 5,000벌, 69천불)
'90. 8. 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 「교류협력기금법」 제정
'90. 8.13	○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90. 8.31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정(관세청)
'90. 9.25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90. 9. 4~ '92. 9.18	○ 제1~8차 남북고위급 회담
'91. 5. 6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미술품·우표·화폐 등을 반입제한품목으로 분류
'91. 7. 1	○ 교류협력국 창설 ○ 반·출입승인 1억불 돌파(반입 105백만불, 반출 12백만불)
'91.12.10 ~12.13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제5차 고위급회담)
'92. 1.16 ~ 1.26	○ 대우 김우중 회장 북한방문
'92. 9.17 ~ 9.18	○ 「3개 부속합의서」 채택(제8차 고위급회담)
'92. 9	○ 최초 위탁가공교역(코오롱상사, 셔츠 6,216벌, 38천불 반입)
'92.10. 5	○ 최초 협력사업자 승인(대우)
'93. 3.12	○ 북한 NPT탈퇴선언
'93. 3.19	○ 이인모 송환
'93. 7	○ 반출·입승인신청서류 간소화(재무제표 등 참고자료 제출 생략)

남북교역의 역사

일 자	주 요 내 용
'94. 2. 5	○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정(관세청)
'94. 6.20	○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94.12. 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승인절차 명시
'94.12.31	○ 반·출입 통관누계 7억불 기록
'95. 1. 3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WTO체제 출범 관련 품목구분
'95. 4	○ 「남북한교역대상물품통관관리지침」 제정 -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95. 4. 1	○ 남북교역 상담창구 확대 - 무역협회 부산지부 등 10개 지부에 남북교역 상담창구 개설
'95. 5	○ 최초의 협력사업 승인(대우)
'95. 6.25 ~10. 7	○ 쌀 15만톤 대북 지원
'95.12.31	○ 반·출입 교역규모 연 2억불 돌파
'95.12.15	○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96. 1.26	○ 최초 합영회사 설립(대우 ↔ 민족산업총회사)
'96. 3. 5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HSK분류표 개정에 따른 품목개정
'96. 5.13	○ LG 대북임가공으로 생산한 컬러TV 첫반입
'96. 7. 6	○ 대우 기술자 최초 방북승인
'97. 1.15	○ 소형선박(2,000톤급 미만)의 인천항 입항금지조치 해제
'97. 4. 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절차 폐지에 따른 절차 변경 등
'97. 7.10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항 승인 절차 간소화
'97. 9.13	○ 북한 영공개방 합의
'97.12.31	○ 남북교역 규모 연 3억불 돌파(누계 15억5천만불)
'98. 1.12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 남북교역의 직교역화 및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추진
'98. 2.25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대통령 취임사)
'98. 3. 2	○ 최초 평양 FIR 통과항로 시범운항(대한항공)

일 자	주 요 내 용
'98. 4.23	○ 대구/평양 FIR 통과항로 개설
'98. 4.30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등
'98. 6.16 ~ 6.23	○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북한방문 - 한우 500두, 차량 50대 반출('98년말 현재 한우 1,001두, 차량 100대 반출)
'98. 6.19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205개 → 178개) 등
'98.11.17	○ 금강산 관광 지원 통신망 개설(6회선)
'98.11.18	○ 금강산 관광선 첫 취항('98년말 현재 23회운항, 10,544명 관광)
'98.12.3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고시」 개정 - 교류협력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99. 2. 4	○ 판문점 임시 세관검사 및 출입심사 사무소 설치 (남북회담사무국 전방사무소)
'99. 2. 4 ~ 2. 6	○ 정주영 명예회장 등 일행 7명 판문점 경유 왕래 - 차량(다이내스티 1대) 반출확인 및 휴대품 검사 출입심사
'99. 3. 9 ~ 3.11	○ 정주영 명예회장 등 일행 5명 남북왕래
'99. 5.18	○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통신회선 증설(2회선, 총 8회선)
'99. 6.10	○ 교류협력국 교류3과를 교역과로 개칭 - 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승인업무는 협력사업 주관과로 이관 - 인도지원물자 반출입승인업무는 인도지원국으로 이관
'99. 8.16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78 → 182개)
'99.10.27	○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 대북투자, 교역·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 마련
'99.12.15	○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 승인

남북교역의 역사

일 자	주 요 내 용
2000. 1. 7	○ 평화자동차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공장 설립 승인
2000. 3.13	○ 삼성전자 남북 S/W 공동개발사업 승인
2000. 4.28	○ 「남북위탁가공교역협의회」 창립
2000. 6.13 ~ 6.15	○ 남북정상회담(평양) - 남북경제협력 등 5개분야 합의(남북공동선언 채택)
2000. 7.24	○ KEDO 사업 지원용 통신 2회선 증설(총 10회선)
2000. 8.11	○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통일각」 간에 광케이블 설치
2000. 8.15 ~ 8.18	○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서울·평양 각 100명)
2000. 8.22	○ 현대아산 개성공단 조성 합의서 체결
2000. 9.18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2000. 9.22 ~ 9.28	○ 백두산·한리산 교차관광(백두산)
2000. 9.26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2000. 9.28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82→185개)
2000.12.16	○ 「남북한 4대 경험 합의서」 채택
2001.10.31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방북유효기간 1년→3년 연장 등)
2001.12.3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85→186개)
2001.12.31	○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2002. 9.18	○ 경의선, 동해선 동시 착공식 개최
2003. 5.19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 쌀차관 40만톤

일 자	주 요 내 용
2003. 6.14	○ 경의선·동해선 철도 궤도 연결행사 진행
2003. 7.31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3. 8.20	○ 남북 4개 경협합의서 발효
2003. 9.29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발효 ○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정
2003.12.24	○ 남북출입사무소 개소(도라산·고성)
2004. 1.29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상 담 안 내

남북교역에 관한 문의·상담은 통일부(교역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교역과)

- ▶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11호
- ▶ 전 화 : 02)722-8911, 02)3703-2363~4
- ▶ F A X : 02)3703-2449
- ▶ 홈페이지 : www.unikorea.go.kr(통일부)
<http://inter-korea.unikorea.go.kr>(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북한팀)

- ▶ 주 소 : (137-170) 서울 서초구 압곡동 300-9
- ▶ 전 화 : 02)3460-7419
- ▶ F A X : 02)3460-7938
- ▶ 홈페이지 : www.kotra.or.kr/nk

☘ 중소기업진흥공단(남북협력지원팀)

- ▶ 주 소 : (150-7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 ▶ 전 화 : 02)769-6861~4
- ▶ F A X : 02)769-6866
- ▶ 홈페이지 : www.sbc.or.kr

▶ 지방상담창구

구 분	위 치	전 화
부 산 지 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051)630-7400
울 산 지 부	울산시 남구 무거동	052)277-3283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북구 산격동	053)601-5288
인 천 지 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032)450-0500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062)600-3000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유성구 장동	042)866-0114
경 기 지 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031)220-0900
의 정 부 지 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031)878-0747/8
충 북 지 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043)230-6800
전 북 지 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063)213-2130
경 남 지 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055)269-5800
강 원 지 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동 1가	033)256-9611/3
강 룡 지 부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033)646-9967/8
제 주 지 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064)751-2055

❖ 한국무역협회(남북교역팀)

- ▶ 주 소 : (135-7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6층
- ▶ 전 화 : 02)6000-5242~4
- ▶ F A X : 02)6000-5328
- ▶ 홈페이지 : www.kita.net
- ▶ 지방상담창구

구 분	위 치	전 화
강 원 지 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033)256-3067~8
경 기 지 부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031)259-7850~3
경 남 지 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055)282-4115~6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우산동	062)943-9400~1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신천동	053)753-7531~3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장동	042)864-4620~2
부 산 지 부	부산시 중앙동	051)993-3300~5
울 산 지 구	울산시 연암동	052)287-3060~1
인 천 지 부	인천시 주안동	032)420-0011~3
전 북 지 부	전북 전주시 금암동	063)214-6991~2
충 북 지 부	충북 청주시 윤천동	043)236-1171~3

* 남북교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안내책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상담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남북교역실무안내

2004년 3월 일 인쇄

2004년 3월 일 발행

발행처 :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역과

TEL. 02)722-8911

FAX. 02)3703-2449

인쇄처 : 웃고문화사

TEL. 02)2267-3956

FAX. 02)2268-2361

【비매품】

